
[주제1] 재정운영표 정보충실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부제 :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2010. 10. 13

국가회계기준센터

목 차

I. 서 론

II. 재정운영표의 의의

1. 재정운영표의 작성 목적 및 양식
2. 재정운영표 각 항목의 의미
3.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비교
 - 3.1 작성목적 차이
 - 3.2 주요 개념차이
 - 3.2.1 교환·비교환거래
 - 3.2.2 수익·비용 구분기준의 차이
 - 3.2.3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제공 차이 요약

III.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작성사례 분석

1. 국가회계실체의 구분
2.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 작성차이
3. 사업형 회계실체
 - 3.1 기업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사례분석
 - 3.1.1 기업특별회계
 - 3.1.2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영표 분석
 - 3.1.3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 비교 및 시사점
 - 3.2 기금
 - 3.2.1 기금사례 총괄분석
 - 3.2.2 기금사례 분석 : 고용보험기금 사례분석
 - 3.2.3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영표 분석
 - 3.2.4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 비교 및 시사점

IV. 해외사례 분석 : 미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1. 미국지방정부의 회계실체
2.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 특징 분석
 - 2.1 행정형 회계 <참고자료 4.2 및 4.3>
 - 2.1.1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1)」
 - 2.1.2 「수익·비용·잔액 변동보고서」 장단점
 - 2.2 사업형 회계 <참고자료 4.4 및 4.5>
 - 2.2.1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2)」
 - 2.2.2.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장단점
3.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와의 차이 비교 및 시사점

V.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1. 사업형 회계 중 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2. 사업형 회계 중 수익창출활동이 없는 기금의 경우 개선방안
 - (1) 재정운영표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순원가 정보활용 방안 제고
 - (2) 관리운영비의 간략한 표시
 - (3) 순자산변동 내역을 포함하는 방안
 - (4) 재정운영결과 표시방법 변경
 - (5) 일시적으로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융자나 보증수수료 등)
3. 사업형 회계의 손익계산서 보충공시 의무화
4. 국가회계기준 센터의 제언

1)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2)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Net Assets

- <표 2.1> 재정운영표의 작성양식
- <표 3.1>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구성내역
- <표 3.2> 행정형 회계 및 사업형 회계 구분기준
- <표 3.3> 기업특별회계 운용성과 요약 : 손익방식
- <표 3.4> 기업특별회계 운용성과 요약 : 국가회계기준 방식
- <표 3.5> 2009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운영표
- <표 3.6> 2009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 <표 3.7> 기금 재정운영성과 총괄표 : 국가회계기준 적용 재정운영표
- <표 3.8> 프로그램 수익이 프로그램원가를 초과하는 기금 8개
- <표 3.9> 2009년도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 : 고용보험기금
- <표 3.10> 2009년도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 고용보험기금
- <표 4.1> 미국지방정부 회계실체 구분
- <표 4.2> 미국지방정부 행정형 · 사업형 재정운영보고서 특징
- <표 5.1> 작성사례 :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영표 개선

<참고자료 4.1>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_정부통합재정활동보고서 (Government-wide Statement of Activities)

<참고자료 4.2>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_정부형 회계의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

(Governmental Fund :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참고자료 4.3>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_통합대상 정부형 회계의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

(Nonmajor Governmental Fund :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참고자료 4.4>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_사업형 회계의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Proprietary Fund :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Net Assets)

<참고자료 4.5>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_사업형 중 내부서비스 회계의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Internal Service Fund :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Net Assets)

I. 서론

정부회계는 민간부문의 기업회계와 달리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회계실체로 구성된 정부재정을 그 회계대상으로 하며, 전통적으로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다만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 결산보고서 이외에 발생주의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도 추가적으로 작성 보고하여 왔다.

최근 정부부문에다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 회계”)이 도입되면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예산회계방식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의 변동내역, 재정사업의 운영원가 등과 같은 유용한 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는 재무제표 역시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회계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재무정보의 활용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정보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특히, 재정운영표는 수행한 사업의 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 상의 손익계산서와 비교되는데, 작성목적 및 작성양식, 수익·비용 등의 표시방법 등에서 회계실체별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운영표가 최초로 작성되는 반면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 작성되던 손익계산서가 국가회계기준

의 재정운영표로 변경 대체 되는 것이므로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 보고된 재무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회계실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운영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준칙 제4조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와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사업형 회계라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운영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순원가 방식의 재정운영표가 일반회계 뿐 아니라 사업형 회계에 속하는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특성 역시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형 회계의 경우 ‘독립적 수익창출활동’이 순원가방식의 재정운영표에서 적절하게 보고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세부사항으로 제2장에서는 재정운영표의 작성목적 및 손익계산서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재정운영표의 작성의의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고 사업형 회계에 속하는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의 작성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사례별로 2009년도 작성된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분석하여 재정운영표와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미국지방정부사례를 바탕으로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작성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II. 재정운영표의 의의

1. 재정운영표의 작성 목적 및 양식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재정운영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프로그램순원가를 산출하는 구조이다. 프로그램이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 정부의 정책, 사업, 활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 사업 및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순원가 정보는 프로그램의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평가에 관한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재정운영표의 작성목적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프로그램별 투입원가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성과를 파악한 후 이러한 분석정보를 재정활동(예, 국회예산심의, 정부의 사업수행방식 개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재정운영표 각 항목의 의미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도출하고 비교환수익 등을 반영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재정운영표에서 주요한 항목 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관련 교환거래 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소비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프로그램 총원가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직접원가 뿐 아니라 배부된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수익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수익이다. 행정형 회계에서는 프로그램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형 회계에서는 수익창출활동 또는 유상급부 서비스가 존재함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수익이 발생하여 프로그램순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되기도 한다.

- **관리비용 및 비배분비용·수익 중 관리비용**은 기업회계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와 같이 기관이나 조직의 기본 목적을 수행하는 활동에 소비되는 경비로서 프로그램사업비와 달리 절약과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비배분비용·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한 경비나 또는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도 영업외손익이나 특별손익은 경영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이를 성과평가를 위한 순원가 정보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기업회계의 경상손익과 같이 행정형 회계에서는 경상적인 사업이나 기관운영 등 재정활동에 소비된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에서는 경상적인 활동에 소비된 자원의 규모를 알려주어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 달성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순원가는 정부의 보조금 등 비교환수익과 출연금 등이 필요함을 표시하고 부(-)의 순원가인 경우에는 비교환수익 없이도 충분하게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재정운영결과가 잉여로 표시된다고 하여 이는 성과지표를 긍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되므로 재정운

영결과는 재정순원가와 동일하다.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의 당기순손익과 비교되며 기금유지, 독립채산제 및 원가회수 달성여부를 의미하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표 2.1> 재정운영표의 작성양식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기금, OO부처			(단위:)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XX			XXX
IV. 비배분수익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3.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비교

3.1 작성목적 차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³⁾.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수익 창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매출에서 시작하여 당기순이익으로

3)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59

끝나는 수익-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항에서는 재정운영표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정부의 정책은 프로그램 단위로 집행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에서 시작되는 순원가 산출구조를 채택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투입원가를 보여주고 나중에 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 투입원가와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3.2 주요 개념차이

3.2.1 교환·비교환거래

국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먼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환거래는 거래당사자 상호 간에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또한, 교환거래는 회계실체가 자산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같은 가치만큼의 상품, 서비스 기타 자산형태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⁵⁾. 특히, 교환거래는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거나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로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소모성물품비, 인건비 등이 있다.

한편, 비교환거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적·행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제공받은 가치에 대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대가를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환거래는 해당하는 거래가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정부 일반회계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5) 정부 및 비영리회계(편호범) p124.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비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국가회계에서 교환거래 및 비교환거래로의 구분은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순원가 산출과정에 비교환수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프로그램 성과평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순원가의 계산단계에서 반영하고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한다. 비교환거래는 비교환수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되며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닌 재정운영결과에만 반영된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원가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대응시킴으로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소비된 순원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재정운영표의 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일반납세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성과측정시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을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3.2.2 수익·비용 구분기준의 차이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에서 수익·비용을 집계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 그 외 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로 구분하여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특별손익 등으로 구분한다. 손익계산서 상에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와 그 이외의 성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능력,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두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추적한다.

반면 재정운영표에 있어서 수익·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 구분기준에 따르며 발생된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프로그램관련성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

관리비용과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되며 수익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교환수익인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프로그램에 배분하기 어려운 수익인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업형회계에 한하여 비교환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분리 보고한다.

3.2.3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제공 차이 요약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과 비교환수익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영업외손익을 가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⁶⁾ 이처럼 재정운영표의 구조가 민간기업들의 손익계산서와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차이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국가 전체의 질서유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정부공권력에 의한 과세권을 통해 충당한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주된 내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달리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정책)별 원가와 관리운영비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반면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수익 창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영업이익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며 매출에서 시작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끝나는 수익-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손익계산서 작성시 영업손익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회계와 국가회계의 특성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영업손익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II.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작성사례 분석

1. 국가회계실체의 구분

국가회계의 특징은 기금회계기법을 사용하고 다수의 회계실체 (Accounting Entity)를 보유하는 것이다.⁷⁾ 회계실체란 수행주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에 따라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표 3.1>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구성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63개) ⁸⁾
	기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병원 등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기금 41개 금융성기금 11개 계정성기금 5개 사회보험성 6개

각 회계실체는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분류되며 국가회계기준의 원가계산준칙 제4조(국가회계실체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행정형 회계란 정부형 회계실체라고도 하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⁹⁾ 제외)를 말한다.

사업형 회계란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하며 비용회수와 독립채산제 및 자본유지의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국가회계보다는 기업회계와 유사하며 현재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가 여기에 속한다.

7) 이경섭.(2007). “국가회계실체 범위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제5권 2호

8) 기획재정부, 「2010년 기금현황」 (2010.6)

9) 이 보고서에서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업특별회계’로 부르도록 한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면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회계실체별 필요한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른 회계구분을 바탕으로 각 회계에 속하는 회계실체별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표 3.2> 행정형 회계 및 사업형 회계 구분기준

회계 구분기준	행정형 회계		사업형 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특)	기 금
▪ 특정목적에 따라 회계설치	X	○	○	○
▪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X	○	○	○
▪ 조세 이외의 특정재원	X	△	○	○
▪ 독립채산 및 자본유지	X	X	○	○
▪ 과거 기업회계기준 보고서제출	X	X	○	○
▪ 유상급부 서비스제공	X	△	○	△
▪ 주요사업이 독립적 수익창출	X	X	○	△
▪ 이익 및 손실의 처분 규정	X	X	○	X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구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주요 사업이 유상의 서비스의 제공, 즉 독립적 수익 활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리추구의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의 대가로 원가회수 이상의 교환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사업형 회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현행 원가회계준칙에 따르는 회계구분은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적 수익활동의 실질에 따른 구분이 아닌 독립채산제와 자본유지에 관점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형 회계로 분류되는 기금 역시 과학기술진흥, 순국선열지사사업, 문화·관광지원 등 개별적 보상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무상급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형 회계에 속하는 등기특별회계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기신청·열람과 같은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창출활동이 일어나는 기금 중에서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교환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인

반면 한 개의 프로그램만 수익창출활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 기금을 사업형으로 구분해야 하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사업형 회계구분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별로 구분하는 것에 그쳐 추가적인 기준(Criteria)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립적 수익창출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며 주요 활동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는 목적 등을 준칙이 아닌 상위 기준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형 회계’는 기금과 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현행 구분 기준을 사용하였고, 사업형 회계 내 ‘기금’과 ‘기업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작성사례를 분석하고 별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 작성차이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양식은 동일하며 한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회계 기준의 차이도 거의 없다. 유일한 차이는 “비교환수익 등”의 재정운영표 내 반영 여부이다.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모든 세입은 국고에 불입된 이후 예산배정을 통해 배분되므로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환수익이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행정형 회계의 경우 재정운영순원가는 곧 재정운영결과가 되므로 앞서 설명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원가를 의미하며 성과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표의 경우 순원가 정보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사업형 회계에서는 자본유지 목적의 일부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교환수익이 재정운영표에 반영된다. 이는 사업형 회계의 경우 그 자체가 기금과 같이 별도의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설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부담금 등을 받아 원가회수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교환수익이 재정운영순원가를 초과할 경우 재정운영결과가 (-)의 표시로 나타나게 되므로 과거 손익계산서에서의 이익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는 비교환수익

과 재정운영결과의 의미에 대해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작성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형 회계는 독립된 수익활동을 추구하므로 프로그램총원가를 초과하는 프로그램 수익이 발생하여 프로그램순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업형 회계는 행정형 회계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원가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운영표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정보 유용성 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3. 사업형 회계실체

원가계산준칙에서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를 사업형 회계의 예시로 분류하고 있어 독립적인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확인 없이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는 사업형 회계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형 회계로 분류된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특별회계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이 이루어지며 정부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거나 기업회계와 매우 유사한 반면, 기금의 경우에는 용자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무상급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행정형 회계의 특징을 갖는다.

3.1 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로서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법률로서 설치된다. 현재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특별회계는 독립적인 수익창출활동이 이루어지며 정부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거나 기업회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순원가 정보

제공 목적인 재정운영표 보다는 이익측정 목적의 손익계산서가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은 기업특별회계의 운영성과를 손익방식과 국가회계기준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3.3> 기업특별회계 운용성과 요약 : 손익방식

(단위:억원)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영업수익	4,772	1,388	28,863	25,558
영업비용	7,449	1,167	28,137	25,218
영업이익(손실)	(2,677)	221	726	340
영업외이익(손실)	6308	(-)	447	39
경상이익	3,631	221	1,173	389
특별손익	-	(1)	43	-
당기순이익	3,631	220	1,216	389*¹

*1. 우체국 예금의 경우 단기매매증권 회계기준차이 △416억원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와 다름

<표 3.4> 기업특별회계 운용성과 요약 : 국가회계기준 방식

(단위:억원)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프로그램순원가	2,551	△1,015	△16,767	3,192
프로그램 총원가	7,324	373	6,992	20,960
프로그램 수익	4,773	1,388	23,759	17,768
관리운영비	0	666	20,788	3
비배분비용	788	167	400	3,185
비배분수익	15	35	486	9,471
재정운영순원가	3,324	△216	3,935	△3,092
비교환수익 등	6,955	4	5,150	△3,118
재정운영결과	△3,631	△220	△1,216	26

상기에서 보듯이 기업특별회계는 프로그램수익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수익창출활동이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과 <표 3.4> 의 요약정보를 비교해 보면 손익방식의 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쉽게 이해되나, 재정운영표 방식은 재정운영결과의 부호가 반대로 표시되어 재정운영결과가 적자인지, 잉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프로그램 총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인한 순원가 정보의 부의 표시 역시 정보의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기업특별회계가 재정운영표 작성 취지에 적합한 사업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수익발생이 원가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측정 손익계산서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방식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재원이전지출 등과 같은 비교환거래가 분리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활동과는 무관한 재원의 변동이 회계실체의 성과로 보고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방식이 유용하다고만 주장하기도 어렵다. 손익계산서 상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우 당기순손실 2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업 활동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일반회계 무상이전지출액에 따른 것이다. 즉 재정운영순원가(경상이익)는 3,092억원으로 원가대비 추가 수익을 거뒀으나 수익금을 초과하는 3,11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른 손실인 것이다.

사업형 회계 중 기업형 활동을 수행하는 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는 사업특성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와 기존에 작성해 온 손익계산서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재정운영표의 유용성 및 개선필요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1.1 기업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사례분석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내자 및 외자의 구매·공급 관리 및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해외 수입 원자재 등 비축물자의 구매·방출, 정부물품 관리·운용의 총괄관리 및 재정집행·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기업이다. 프로그램 수익은 총 1,338억원으로 프로그램원가 373억원을 크게 초과하며 교환거래로서 독립적 수익창출활동이 이루

어지고,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모두 부의 표시가 되므로 순원가 정보 보다는 기업회계방식의 손익정보가 적절할 수 있다.

3.1.2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영표 분석

(1) 프로그램순원가 정보 미흡

2009회계연도 작성된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는 <표 3.5>에서 보듯이 “조달사업운영”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업내역 및 성질별 구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총원가는 373억원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138,831백만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는 △101,511이 발생하였다는 정보 외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조달특별회계 외에도 기업특별회계들은 프로그램이 단 하나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순원가 정보가 미흡하다.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에서는 내자구매취급수익, 시설계약취급수익, 외자구매취급수익, 비축물자취급 수익 및 사업이익금 등 주요 사업별 수익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수익은 단일 프로그램수익 정보만 제공되므로 충실한 공시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프로그램총원가의 경우 성질별 내역 역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배분되는 간접원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즉 프로그램예산체계가 단순하게 편성되어 있는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2)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수익·비용 관련 : 지나치게 상세, 구분 불명확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른 사업비용과 달리 효율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분리표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관리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등 20여 가지 계정이 나열되므로 지급보험료

33백만원, 유류비 97백만원과 같이 그 금액적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항목들의 경우 프로그램과 대응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기 어려운 비용 및 수익에 해당하는데, 조달특별회계의 비배분비용에 보고된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220백만원 및 복리후생비(국민연금부담금 등) 5,005백만원 등은 프로그램원가 혹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보고되어야 함에도, 비배분비용등에 보고되고 있어 구분이 불명확한 면이 있다. 재정운영표에서 비배분수익·비용을 구분한 것은 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익이 사업원가 및 관리비용에 배분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비교환수익

조달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제재금수익 353억원으로 프로그램수익 즉, 교환거래에 따른 수익 대비 그 규모가 매우 작다. 하지만 제재금 수익의 실질이 국유재산 임대료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수익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교환수익에 해당된다. 이처럼 교환수익이면서도 비교환수익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발생수익과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와 같이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타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일관적인 정보제공일 수 있다.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비교환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수익창출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회계와 유사한 회계임을 알 수 있다.

(4) 이익·손실 표시방법 차이

조달특별회계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01,511백만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 △21,644백만원, 재정운영결과는 △21,997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재정운영표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는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프로그램순원가나 재정운영순원가는 계정명에 '원가'가 표시되어 있어 (-)로 표시되는 경우 알기 쉽지는 않지만 수익발생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재정운영결과의 경우 계정명칭이 중복적이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로 표시된 경우 손실인지 이익인지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3.1.3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 비교 및 시사점

기업회계 손익계산서 방식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기업특별회계 등이 수행하는 예산회계와는 무관한 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기준의 정보가 산출되지 않고 성질별 계정과목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작성됨에 따라 국회 등에서 공시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정보와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손익계산서 활용시 기업특별회계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원가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이 원가에 대한 회수 성격인 수익을 매칭시켜 표현하지 못한다.

조달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는 표시방법으로 인한 차이가 대부분이다. 재정운영순원가와 경상손익이 제공하는 의미는 매우 유사하며 그 금액이 동일하고, 재정운영결과 및 당기순이익 역시 동일하다. 프로그램총원가는 조달사업운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업이 주요 영업활동인지 여부에 따라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나라장터 운영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상된다. 사업형회계의 경우 주요영업활동과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구분해 줄 경우 성과평가지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유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익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과 금액이 동일하나,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상 “조달사업운영프로그램” 하나만 존재하므로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는 반면 조달특별회계의 손익계산서 <표 3.6> 에서 보듯이 영업수익은 내자구매취급수익, 시설계약취급수익, 외자구매취급수익, 비축물자취급 수익 및 사업이익금 등 주요 사업별 수익으로 구분되어 구

체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업수익에 주석을 병기표시하고 있어 수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손익계산서 방식에서는 매출총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업(사업)수익에서 영업(사업)비용을 차감하여 바로 영업이익을 구하고 있으므로, 매출총이익과 판매관리비 등이 구분되지 않아 재정운영표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구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정보보다 재정운영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 및 내용이 미흡하고, '비교환수익'과 '비배분비용' 등의 계정 구분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표시방법을 유지한다면 관련 내역에 주석 번호 등을 병기하고 이에 대한 명세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총원가 및 프로그램 수익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순원가의 중요성 대비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인 데 비해 관리운영비의 경우 성질별로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운영표 작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형태를 갖고 있어, 순원가 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로 표시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특별회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운영보고 양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 2009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총원가	수익	순원가	문제점
I. 프로그램순원가	37,320	138,831	△101,511	1.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상세내역 표시 어려우며 순원가 마이너스표시
조달사업 운영	37,320	138,831	△101,511	
II. 관리운영비			66,588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비용
인건비			49,705	1. 금액적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됨 2. 인건비, 경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하고 구체적 비목은 주석으로 공시 3. 사업비와 달리 절약 및 경제성이 원칙이 적용
복리후생비			2,812	
소모품비			2,002	
인쇄비			586	
광고선전비			309	
지급수수료			556	
세금과공과			678	
수도광열비			469	
지급보험료			33	
피복비와급량비			53	
교육훈련비			290	
지급임차료			104	
유류비			97	
수선유지비			1,040	
여비교통비			1,871	
업무추진비			1,534	
외주용역비			2,205	
보조비			493	
감가상각비			546	
연구개발비			1,203	
III. 비배분비용			16,739	프로그램에 직접대응 어려운 비용
인건비			220	1. 기업회계기준의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에 해당 2. 주로,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기타 비용 등이 해당 3.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공무원연금부담금)의 경우 급여 등의 인건비와 함께 관리운영비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
복리후생비			5,005	
소모품비			0	
수선유지비			40	
감가상각비			7,252	
이자비용			1,008	
자산처분손실			2,606	
기타비용			607	
IV. 비배분수익			3,460	프로그램에 직접대응 어려운 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941	
자산처분이익			195	
기타수익			1,324	
V. 재정운영순원가			△21,644	마이너스 표시로 인해 오해가능
VI. 비교환수익 등			353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등
제재금수익			353	
V. 재정운영결과 (v-vi)			△21,997	마이너스 표시로 인해 오해가능

<표 3.6> 2009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산서	금 액		비 고
I. 영 업 수 익 (주석20)		138,831	프로그램수익과 동일
1.내자구매취급수익	94,776		재정운영표에 비해 세부적인 항목이 제공되며 <주석>을 통해 상세 정보 추가
2.시설계약취급수익	30,219		
3.외자구매취급수익	10,267		
4.비축물자사업이익금	3,569		
II. 영 업 비 용		116,682	
1.인건비	49,038		1.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사업비용 및 관리비용, 비배분 비용 등이 혼합 2. 프로그램 사업원가를 추정하기 어려움
2.비정규직보수	0		
3.여비	2,260		
4.복리후생비	0		
5.운영비	17,632		
6.업무추진비	540		
7.직무수행경비	3,527		
8.보전금	1,583		
9.보험료	372		
10.전출금	4,559		
11.일반회계전출금	9,041		
12.연구개발비	20,332		
13.배상금및반환금	0		
14.감가상각비	7,169		
15.무형자산상각비	629		
III. 영 업 이 익		22,150	
IV. 영 업 외 수 익		3,798	
1.기타잡수익(주석21)	578		1. 비배분 수익과 자산수증이익을 제외한 비교환수익 전체와 일치
2.G2B취급수익	3,025		
3.유형자산처분익(주석22)	195		
V. 영 업 외 비 용		3,801	
1.이자비용(주석23)	1,008		
2.유형자산처분손실(주석24)	2,606		
3.기타잡비용	0		
4.민간보조금	186		
VI. 경 상 이 익		22,147	재정순원가와 유사한 정보제공
VII. 특 별 이 익		15	
1.자산수증이익(주석25)	15		
VIII. 특 별 손 실		165	
1.전기수정손실	165		
IX. 당 기 순 이 익		21,997	재정운영결과 동일함

3.2 기금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 금융성, 계정성, 사업성으로 분류한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62조 및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2008회계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해왔다. 기금은 특정목적에 위해 조성된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독립되어 독립채산 및 자본유지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모든 기금이 독립적인 수익창출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기업특별회계의 개선방안과는 다른 개선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3.2.1 기금사례 총괄분석

기금은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사업형 회계로 분류되나, 모든 기금이 사업형 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교환거래를 통한 독립적인 수익창출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금들은 자본유지 및 독립채산 성격을 제외하면 행정형 회계의 특별회계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기금의 분류에 따라 사업성, 사회보험성, 금융성, 계정성 기금별로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금의 회계실체별로 유용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본 보고서의 논의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기금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사업형 회계’의 구분기준에 따라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는 기금과 그렇지 않은 기금으로 분류기준을 단순화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 3.7>은 기금 63개의 재정운영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3.7> 기금 재정운영성과 총괄표 : 국가회계기준 적용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비교환 수익등	재정운영 결과
고용보험기금	63,576	-	63,576	59,515	43,436	16,079
공공자금관리기금	137,050	7,602	129,448	10,485	4,965	5,520
공무원연금기금	79,679	60,778	18,901	15,749	21,513	(5,764)
공적자금상환기금	-	-	-	24,126	20,648	3,478
과학기술진흥기금	1,401	-	1,401	1,407	(2,938)	4,345
관광진흥개발기금	3,215	488	2,727	2,767	3,093	(326)
구조조정기금	4,330	4,152	178	67	-	67
국가장학기금	3,402	680	2,722	2,322	1,636	686
국민건강증진기금	16,337	-	16,337	16,240	16,400	(160)
국민연금기금	242,136	238,736	3,400	(126,433)	192	(126,625)
국민주택기금	21,514	25,956	(4,442)	(5,061)	1,259	(6,320)
국민체육진흥기금	3,878	74	3,804	(1,394)	468	(1,862)
국제교류기금	685	-	685	666	367	299
군인복지기금	733	2,565	(1,832)	580	353	227
군인연금기금	20,564	3,187	17,377	17,185	16,875	31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11	119	92	142	142	0
금강수계관리기금	856	-	856	865	888	(23)
기술신용보증기금	7,834	3,097	4,737	4,413	6,818	(2,40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24	-	1,924	1,955	1,873	82
남북협력기금	818	79	739	2,085	1	2,08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294	585	3,709	3,049	1,742	1,30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655	5,979	(324)	74	793	(71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6)	-	(6)
농어업재해해보험기금	4	36	(32)	(103)	250	(353)
농지관리기금	3,834	742	3,092	3,650	8,328	(4,678)
대외경제협력기금	76	419	(343)	(642)	-	(642)
문화예술진흥기금	798	10	788	789	321	46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049	-	9,049	7,562	38,311	(30,749)
방송발전기금	1,473	-	1,473	1,260	1,438	(178)
보훈기금	603	413	190	220	348	(128)
복권기금	18,105	24,712	(6,607)	(6,744)	(6,488)	(256)
부실채권정리기금	-	-	-	(2,064)	-	(2,06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4,605	16,723	(2,118)	(5,814)	1	(5,815)
사학진흥기금	232	320	(88)	(82)	-	(8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	34	46	(52)	-	(5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7,140	143	36,997	40,502	49,462	(8,960)

기 금 명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비교환 수익등	재정운영 결과
수산발전기금	730	286	444	427	314	113
수출보험기금	44,769	41,539	3,230	3,129	-	3,12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0	-	60	45	391	(346)
신용보증기금	15,578	6,441	9,137	7,721	13,675	(5,954)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49	-	49	408	1,071	(663)
양곡증권정리기금	-	-	-	2,543	2,677	(134)
언론진흥기금	51	2	49	32	50	(18)
여성발전기금	112	18	94	107	54	5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67	-	667	659	638	21
영화발전기금	334	-	334	255	375	(12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8,686	17,973	713	432	8,656	(8,224)
외국환평형기금	136,496	126,908	9,588	47,966	1,000	46,96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826	-	1,826	1,804	1,811	(7)
응급의료기금	339	22	317	302	357	(55)
임금채권보장기금	3,556	-	3,556	1,983	1,124	85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267	38	1,229	1,102	-	1,10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940	-	1,940	2,360	1,741	619
전력산업기반기금	14,382	919	13,463	12,740	12,752	(12)
정보통신진흥기금	7,745	357	7,388	7,148	4,397	2,7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27	1,189	(762)	(1,328)	4,256	(5,58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033	5,710	3,323	3,880	2,412	1,468
지역신문발전기금	120	1	119	96	50	46
청소년육성기금	610	3	607	486	165	321
축산발전기금	3,780	402	3,378	3,338	1,356	1,98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3	7	16	12	3	9
한강수계관리기금	4,655	-	4,655	4,704	4,047	657
총합계	973,326	599,444	373,882	171,631	295,867	(124,236)

상기 표에서 보듯이 총 63개의 기금 중 프로그램수익이 발생하는 기금은 42개 (67%)이며 독립적 수익활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수익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⁰⁾ <표 3.8>에서 보듯이 이 중에서 프로그램원가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수익이 발생하는 기금은 8개 (12%)에 불과하며 프로그램수익은 보험료납부액,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등이 대부분이다.

10)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제한 등의 이유로 기금을 사업형과 행정형으로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3.8> 프로그램 수익이 프로그램원가를 초과하는 기금 8개

(단위: 백만원)

기금명	구분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순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회보험성	14,605	16,723	(2,118)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232	320	(88)
군인복지기금	사업성	733	2,565	(1,832)
국민주택기금	사업성	21,514	25,956	(4,44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성	427	1,189	(76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76	419	(343)
복권기금	계정성	18,105	24,712	(6,60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5,655	5,979	(324)

또한 기금 51개 (81%)가 재정운영순원가 정보가 (+)로 표시되며 순원가 정보가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및 출연금 등과 같은 비교환 수익으로 인하여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즉, 잉여로 표시되는 기금은 34개 (54%)로 대부분 비교환수익을 통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기금사례 분석 : 고용보험기금 사례분석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업특별회계의 분석결과와 유사할 것이므로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의 재정운영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근거하여 고용안정지원금 및 훈련비 등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로부터 임금총액의 1.15~1.7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며 이와 관련한 가산금 및 연체금,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기금재원 조성 중 고용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에 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사회보장성 기금에 해당하며 <표 3.9>에서 보듯이 사업구조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손익이나 영업

이익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은 현행 재정운영표 기준의 순원가 정보제공이 유용한 회계실체로 구분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6조 3576억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5조 9514억원, 재정운영결과는 1조 6078억원으로 순원가 정보를 위주로 표시하고 있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에서 당기순손실과 동일한 금액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률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증가에 따라 2009년도 기준 자본잠식액이 발생하였고 그 규모는 7,403 억원에 이른다.

3.2.3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영표 분석

(1) 프로그램순원가 정보 보완필요

재정운영표에서는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를 제공하며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프로그램에 매칭되는 프로그램 수익은 전혀 없으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형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프로그램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자사업의 경우 이자수익 등을 프로그램수익을 매칭시키지 않은 것은 작성 오류로 보이며, '고용보험료'와 같은 부담금수익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은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비록 직접적인 수혜자와 납부자는 다르지만 잠재적 수혜자와 납부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수익으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원가계산준칙¹¹⁾에서는 보험료 등도 프로그램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순원가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수익의 적절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기금들의 비교환수익과 프로그램수익 중 일부는

11) 제13조(프로그램수익) ①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②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병원수입 등 포함)
2. 연금수익
3. 보험 및 보증수익
4.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분류기준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프로그램 총원가는 6조 3576억원으로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고용평등실현, 장애인고용증진, 고용정책(융자), 직업능력개발(융자) 이상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별로 잘 구분된다. 프로그램수익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와 동일하다. 다만 프로그램 관련 수익·비용의 성질별 내역이 프로그램별로 주석 등에서 자세히 제공된다면 더 유용할 것이다.

(2)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수익·비용 관련 : 지나치게 상세, 구분 불명확

손익계산서의 사업비용 및 사업외 비용에 계상되어 있는 관리운영비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금주체로 하여금 관리운영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할 것이며 방만한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다만 금액적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는 인건비와 인건비외 경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표시하고 주석 등으로 명세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오히려 프로그램별 성질별 내역을 본문에 표시하여 비용전체의 성질별 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대응되지 않거나 배분하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조달특별회계의 사례분석과 동일하게 인건비 등이 비배분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이 불명확하다.

(3)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제재금수익 788억원, 사회보험수익 4조 2295억원, 기타재원조달및이전 354억원으로 총 구성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는 사회보험수익을 사업수익으로 포함하여 영업손익 여부를 표시하는 반면

재정운영표의 경우에는 비교환수익으로 분리 보고함에 따라 재정운영 순원가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운영표에서는 정책사업에 집행한 원가와 재원조성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구분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원가정보가 정확히 표시된다.

(4) 이익·손실 표시방법 차이

고용보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6조 3576억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는 5조 9515억원으로 (+)의 순원가정보를 제공하므로 순원가 표시방식의 재정운영표 적용에 문제가 없으나 재정운영결과의 경우에는 양으로 표시되어 있어 재정운영표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는 1조 6078억원이 이익인지 원가인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3.2.4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 비교 및 시사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는 일부 회계처리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고, 표시방법에 인한 차이가 대부분이다. <표 3.10>에서 보듯이 재정운영표와 연계가 가능하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료 등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비교환수익도 사업수익에 계상되며 사업비용에는 프로그램 사업비용 뿐 아니라 관리비용, 비배분비용도 함께 계상되어 프로그램 사업의 고유한 원가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교환수익은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기금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처럼 비교환수익을 기금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기금의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재정운영 결과는 당기순손실로 표시되며 그 금액은 동일하나 이해가능성이 더 높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로 제공되는 정보보다 재정운영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및 순원가의 파악에 더

목적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정운영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양식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별 순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보이나,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 수익의 성질별 내역이 포함될 경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도 행정형 및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작성시 프로그램순원가 명세를 통해 성질별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별로 분류되지 않아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떤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한 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순원가 명세서를 프로그램별로 작성하여 주석으로 공시하거나 본문에 상세하게 표시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순원가의 중요성 대비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인 데 비해 관리운영비의 경우 성질별로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사업형 회계에 포함되나 기업특별회계와는 다르게 재정운영표 작성목적에 적합한 대부분의 기금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과 구분되는 사업의 순원가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수익이 거의 없고 비교환수익에 의해 자본유지 및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는 기금의 경우에는 현행 재정운영보고 양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앞서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한 프로그램 순원가의 상세정보, 관리운영비 간략 표시 등과 같은 사항을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3.9> 2009년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운영표 :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영표	총원가	수익	순원가	비 고
I. 프로그램순원가	6,357,617	-	6,357,617	
고용정책	598,145	-	598,145	1. 사업형회계로 구분되나, 사회보장성기금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프로그램 관련수익이 "0" 임 2.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사업은 실제로 교환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프로그램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직업능력개발	1,210,514	-	1,210,514	
고용보험	4,123,384	-	4,123,384	
고용평등실현	421,896	-	421,896	
장애인고용증진	1,660	-	1,660	
고용정책(용자)	1,807	-	1,807	
직업능력개발(용자)	211	-	211	
II. 관리운영비			100,489	
인건비			3,868	
복리후생비			368	
소모품비			5,774	
지급수수료			8,077	
세금과공과			8,517	
피복비와급량비			2	
지급임차료			1,068	
유류비			68	
수선유지비			9,020	
여비교통비			785	
업무추진비			508	
외주용역비			1,335	
보전비			345	
출연비			53,705	
보조비			7,049	
III. 비배분비용			149,299	
인건비			291	
감가상각비			9,806	
대손상각비			59,026	
기타비용			80,176	
IV. 비배분수익			655,935	
이자수익			139,860	
자산처분이익			60,061	
기타수익			456,014	책임준비전입금 및 환입금 순계
V. 재정운영순원가			5,951,470	
VI. 비교환수익 등			4,343,627	
제재금수익			78,761	
사회보험수익			4,229,502	손익계산서 상 사업수익해당
기타재원조달및이전			35,364	
VII. 재정운영결과			1,607,843	

<표 3.10> 2009년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고용보험 손익계산서	금액 (백만원)		재정운영표와의 연계
I. 사업수익		6,061,760	
1. 고용보험료수입	4,186,400		
보험료	4,229,502		비교환수익-사회보험수익
가산금	3,442		비교환수익-제재금수익
연체료	33,441		비교환수익-제재금수익
과오납반환금	△58,953		비배분비용-기타비용
미수금감액	△21,031		비배분비용-기타비용
2. 기금운용수익	196,457		
예탁금이자	136,395		비배분수익-이자수익
수익증권환매이익	28,816		비배분수익-자산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1,245		비배분수익-자산처분이익
3. 책임준비금환입액	1,678,903		
책임준비금환입액	1,678,903		비배분수익-기타수익
II. 사업비용		7,665,091	
1. 고용보험사업비용	7,665,09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	1,941,032		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
실업급여사업비	4,433,612		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
고용보험운영비	67,387		관리운영비
기금관리운영비	149		관리운영비
책임준비금전입액	1,222,912		비배분수익-기타수익
III. 사업이익		△1,603,331	
IV. 사업외수익		64,802	
부정이득징수금	33,795		비교환수익-제재금수익
부당이득징수금	8,051		비교환수익-제재금수익
기타잡수입	21		비배분수익-기타수익
융자금이자수입	3,055		비배분수익-이자수익
기타재산수입	410		비배분수익-이자수익
체납처분비	33		비교환수익-제재금수익
기금전입금	10,218		비교환수익-기타채원조달및이전
자산수증이익	9,219		비교환수익-기타채원조달및이전
대손충당금환입액	1		비배분수익-기타수익
V. 사업외비용		69,314	
감가상각비	9,786		비배분비용-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20		비배분비용-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91		비배분비용-인건비
대손상각비	59,026		비배분비용-대손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191		비배분비용-기타비용
VI. 경상이익		△1,607,843	
VII. 당기순이익		△1,607,843	

IV. 해외사례 분석 : 미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1999년 6월 발표된 GASB 34호는 기존 발생주의를 적용하던 미국지방정부회계체계의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부통합회계(Government-wide)에 더하여 각종 회계보고실체의 개별적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정부회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계보고실체(fund¹²)별로 별도의 재무보고양식과 회계원칙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지방정부의 회계실체

미국 회계실체는 크게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신탁형회계으로 구분된다.

<표 4.1> 미국지방정부 회계실체 구분

	미국지방정부 회계실체 구분 ¹³⁾	작성 재무제표
행정형회계 (Governmental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The general fund) ▪ 특별수익회계 (Special revenue funds) ▪ 자본시설회계(Capital projects funds) ▪ 차입금상환회계(Debt service funds) ▪ 영구기부회계(Permanent funds) 	의무공시 재무제표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
사업형회계 (Proprietary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업회계 (Enterprise funds) ▪ 내부 서비스 회계(Internal service funds) 	의무공시 재무제표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보고서 (statement of net assets) ▪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신탁형회계 (Fiduciary funds and similar component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및 타 종업원복지) 신탁회계¹⁴⁾ ▪ 투자신탁회계 (Investment trust funds) ▪ 사적(私的)신탁회계 (Private-purpose trust funds) ▪ 대행회계 (Agency funds) 	의무공시 재무제표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순자산보고서 (statement of fiduciary net assets) ▪ 신탁순자산변동보고서 (statement of change in fiduciary net assets)

12) Fund refers to a "fiscal and accounting entity with a self-balancing set of accounts recording cash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together with all related liabilities and residual equities or balances, and changes therein, which are segregat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specific activities or attaining certain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special regulations, restrictions, or limitations.", National Council on Governmental Accounting Statement 1, par. 16.

사업형 회계는 서비스제공 대가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기업 활동과 유사한 회계로서 이용주체에 따라 내부서비스회계와 정부기업 회계로 구분된다. GASB 34호의 제66조에 따르면 사업형 회계는 영업 이익, 순자산의 변동(혹은 원가보전), 재정상태와 현금흐름 등의 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업형 회계의 범주는 기업형 회계와 내부서비스회계를 포함한다.

행정형 회계는 사업형 회계를 제외한 세금 등의 비교환수익으로 정부의 일반재정활동을 제공하는 회계이다. GASB 34호의 제64조에 따르면 행정형 회계 보고는 주로 자원의 원천과 사용 및 유동 재무자원 잔액을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며 때로는 예산연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행정형회계의 범주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수익회계, 자본시설회계, 차입금상환회계와 영구기부회계 등이 포함된다.

신탁형 회계는 연금 및 신탁과 관련한 회계로서 사업형 회계나 행정형 회계와는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므로 정부통합재무제표에서 분리되어 보고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분석에서는 정부통합형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형 회계는 제외하고 행정형 및 사업형 회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2.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 특징 분석

미국지방정부는 회계별로 재무보고서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없도록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보고서를 통합하여 부를 경우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로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로 작성되며 순자산 변동내역도 함께 표시된다.

13) GASB 34호 제63조

14) Pension (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s

각 회계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표 4.2>에서 보듯이 보고서의 명칭 및 양식, 작성 기준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표 4.2> 미국지방정부 행정형·사업형 재정운영보고서 특징

	행정형회계 (Governmental funds)	사업형회계 (Proprietary funds)
재정운영표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재정운영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 - 비용 = 지출 대비 수익의 잉여(적자) (+/-) 재원이전·지출, 국공채발행 = 펀드잔액 순변동액 (+) 기초 펀드잔액 = 기말 펀드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외수익비용 = 재원이전·지출전 순손익 (-) 재원이전·지출 = 순자산변동액 (+) 기초순자산 = 기말순자산 누적액
재무보고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조성 및 사용초점 = 순원가 계산 예산회계와 유사 (수정발생주의) 사업수행 외 관리비용 등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 구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발생주의 통합재무제표용 발생주의 조정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흐름표 작성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통해 영업과 영업외 구분

2.1 행정형 회계 <참고자료 4.2 및 4.3>

2.1.1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¹⁵⁾」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의 명칭은 「수익·지출·잔액변동보고서」이며, 수정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되고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에서 지출(expenditures)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수익은 조세수입과 같은 비교환거래 수입도 모두 포함하며 지출은 프로그램 별로 집계되어 작성된다.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차액은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의 잉여(excess(deficiency) of revenues over (under) expenditures)’ 표시하여 수익, 지출차이금액을 잔액(잉여금)으로 이해한다. 바로 하단에는 ‘기타재무적자원 유출입(other financing sources(uses))’ 항목이 표시되며 채권발행, 회계간 재원이전 및 전출 등이 분리되어 표시된다.

15)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수익·지출의 차이잔액과 기타재무적자원변동액을 합산하여 당기펀드 잔액(Net change in fund balance)을 도출하고 기초 펀드잔액과 합산하여 기말잔액을 구하는 구조이다.

2.1.2 「수익·지출 잔액변동보고서」 장단점

수익비용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가능성이 높고 순자산 변동내역도 함께 보여주므로 행정형 회계잔액의 누적잉여금 또는 누적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환수익과 교환수익의 구분이 없고 프로그램별 수익과 비용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¹⁶⁾ 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배분되어야 할 예산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리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수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예산통제가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분류도 없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2 사업형 회계 <참고자료 4.4 및 4.5>

2.2.1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비용 순자산 변동보고서」¹⁷⁾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의 명칭은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이며, 완전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적용된다.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과 영업외로 구분하며 수익·비용의 차이를 이익 또는 손실로 표시하고 현금흐름표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업수익(operating revenue)은 내부서비스회계의 경우에는 재화용역제공 수수료, 정부기업회계에서는 실업보험료, 장애보험료, 전기세, 복권판매 수익금, 수업료, 임차료 등으로 국가회계기준의 프로그램수익과 유사하다.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s)은 성질별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복권상금, 전력구매비,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실업급여 등이다.

16) 단, 통합재무제표로 작성되는 정부형통합재무제표는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별 순원가 구조로 도출된다.

17) Statement of Revenues, Expenses, and Changes in Fund Net Assets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보고하고 재원의 무상이 전 및 전출 내역을 가감하여 순자산 변동액(Changes in net assets)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 순자산과 합산하여 기말순자산을 보고하는 구조이다.

2.2.2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 장단점

사업형 회계에 적합하도록 영업이익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해가능성이 높고 순자산 변동내역도 함께 보여주므로 자본유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4.4>의 2009년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를 보면 사업형 회계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칼럼으로 나눠 표시하고 있어 사업형 회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지방정부의 「수익·비용·순자산변동보고서」는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결과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며 수익과 비용정보가 기능별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복권기금’, ‘실업프로그램’, ‘전력공급’ 등과 같이 회계실체에 따라 주요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행정형 회계와 마찬가지로 관리운영비 등과 같이 예산통제가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분류가 없어 적절한 관리비용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와의 차이 비교 및 시사점

■ 회계실체별 필요한 정보에 따라 별도 양식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통합, 중앙관서, 행정형 회계, 사업형 회계 모두 동일한 양식의 재정운영표를 작성한다. 반면 미국지방정부 회계는 회계별 재무보고 초점에 따라 다르게 작성한다. 미국 정부통합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운영표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순원가를 위주로 작성하고, 사업형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행정형은 수익·지출 차감방식 등 각각 다르게 작성되므로 회계실체의 재정운영결과를 이해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행정형 회계는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순원가의 보고를 통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사업형 회계는 수익창출활동의 결과와 자본유지·독립채산 등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재무보고 초점이 다른 회계별 별도의 보고양식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 역시 각 회계별로 유용한 재정운영표 양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별 명확한 구분기준과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작성구조 차이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 작성구조가 발생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미국지방정부의 경우 정부통합재무제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손익구조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행정형 회계의 경우 조세 등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정보보다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비된 원가정보가 더 유용하므로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운영표의 정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손익구조를 재정운영표에 도입하는 것은 일부 사업형 회계에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순원가 산출방식은 수익 등이 원가를 초과할 경우 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므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손익구조로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순자산 변동내역이 포함된 재정운영표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순자산(잔액) 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작성된다. 국가회계기준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가 혼합된 형태로 한 재무제표를 통해 재원의 조달과 관련한 총체적인 정보를 하나의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형 회계 중 기금의 비교환수익이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에 나뉘어 표시되므로 비교환수익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순자산변동표에서 표시되는 기초, 순자산조정, 기말 순자산액의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재정운영표 하단에서 보여주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동일하면서 참조해야 할 재무제표 개수가 줄어든다면 더 유용할 것이다.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재정운영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보 유용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재정운영결과나 손익 등의 표시 방법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 값인 당기 펀드잔액이나 순자산변동액의 경우 (+)는 잉여, 이익 등을 의미하고 (-)는 적자, 손실 등을 의미하며 다른 합계나 소계들도 전통적인 손익표현 방식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등 주요항목들이 원가를 표현하도록 되어있어 (+)일 경우에는 원가, (-)인 경우에는 원가를 초과한 이익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나 재정운영순원가와 달리 재정운영결과라는 표현은 원가인지 수익인지를 계정명만으로 알기 어려운 중립적인 용어이므로 혼란이 발생한다. 재정운영결과가 △3,631억원인 양곡특별회계와 같이 재정운영결과가 (-)로 표시되는 회계들의 경우 이것이 손실(적자)인지 이익(잉여)인지 재정운영표 전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운영결과의 경우 정보이해도 및 활용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처와 같이 결산감사나 결산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재정운영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곡특별회계의 경우 3,631억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결과' 표시방법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로 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결과' 라는 계정과목명을 손익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가칭)재정운영결과 이익(손실)' 등으로 계정과목을 명확하게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업형 회계에 대한 재정운영정보 제공

<참고자료 4.4 및 4.5>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2009년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사업형 회계를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형 회계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칼럼으로 나눠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는 개별로 작성되고 중앙관서에 통합되어 공시되므로 사업형 회계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행정형 활동 이외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주식 또는 부문별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V.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1. 사업형 회계 중 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기업특별회계는 기업형태로 회계가 운영되며 수익창출 활동이 주요 활동으로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이 아닌 교환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회계실체로서 현행 재정운영표 양식을 수정하여 다른 형태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수익창출과 원가회수 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업회계방식의 손익구조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앞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독립적인 수익창출활동이 일어나므로 원가회수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순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재정운영표 상에서는 항상 (-)의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해가능성이 떨어진다. 사업구조가 수익창출과 관련한 사업의 수행이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손익을 구하는 형태의 재정운영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지방정부의 기업형회계 (Proprietary Fund)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2)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영업손익 정보 제공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국지방정부의 기업형 회계 (Proprietary Fund)와 같이 영업활동과 부수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영업손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주요 영업활동으로 내는 손익정보는 기업특별회계가 운영하는 정부기업의 운영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프로그램 체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업별 내역 상세제공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기업특별회계 모두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각 정부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 중요한 사업의 경우 과거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하던 수준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 및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비교환거래에 대한 분리 작성 보고

비교환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수익과 분리하여 작성 보고하여 회계실체의 사업성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 손익계산서 작성 시 일반회계 진출 등 비교환 거래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표시하여 영업손익을 도출하는 방식은 기업특별회계의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비교환수익 역시 준조세로서 국민들의 부담이므로 그 규모와 사용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5) 관리운영비용과 비배분비용 개선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관리운영비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예산통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상세한 계정내역까지 본문에서 나열할 필요는 없고 주석 등으로 명세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보고의 실익이 불명확한 비배분수익·비용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하여 구분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간략한 구성을 유지하여 중요한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손익의 표시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사업손익을 구하고 관리운영비와 영업외수익·비용을 가감하여 비교환거래 전 손익을 구하는 전통적인 손익구조방식으로 표시하고 이익일 경우에는 (+)로 손실일 경우 (-)로 표시한다.

앞서 다른 개선사항을 반영할 경우 도출되는 재무제표를 조달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작성사례 :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영표 개선

(단위:백만원)

조달특별회계	금 액		
I. 사업수익 (주석공시)		138,831	
1. 내자구매취급수익	94,776		프로그램사업 중 주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시설계약취급수익	30,219		
3. 외자구매취급수익	10,267		
4. 비축물자사업이익금	3,569		
II. 사업비용 (주석공시)		50,094	
1. 내자구매 사업	34,197		프로그램사업 중 주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직접관련 없는 관리운영비 불포함
2. 시설계약 사업	10,905		
3. 외자구매 사업	3,704		
4. 비축물자 사업	1,288		
III. 관리운영경비		66,588	
1. 인건비	49,705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직접관리비용
2. 인건비 외 경비 (주석공시)	16,883		
IV. 영업이익		88,737	주요영업활동에 대한 평가
V. 영업외수익 (비용)		(505)	
1. 기타잡수익(주석21)	240		프로그램 사업이라도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
2. G2B취급수익	3,025		
3. 유형자산처분이익(주석22)	195		
4. 이자비용(주석23)	(1,008)		
5. 유형자산처분손실(주석24)	(2,606)		
6. 기타비용	(351)		
VI. 비교환거래 전 이익(손실)		21,644	재정운영순원가 동일금액
VII. 비교환거래 수익 등		353	
1. 제재금 수익	353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교환거래는 별도로 보여줌
2. 일반회계 등 전출금	(161,805)		
3. 타회계 전입금 등	161,805		
VIII. 재정운영결과		21,997	

앞서 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를 영업이익 보고형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렇게 개선된 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표를 주재무제표로 대체할 것인지 필수정보 등으로 보충 공시할 것인지 공시방안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실체별로 각각 다른 양식의 재정운영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할 경우 각 회계실체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09년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가 이미 공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의 재정운영표로 대체할 경우 적용대상 회계

실체에게는 작성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및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작성 시 별도의 조정표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재정운영표는 그대로 작성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필수보충정보 등을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들이 주 재무제표 위주로 정보를 이용하고 분석하므로 정보유용성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로 남을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준마련을 통해 주재무제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2. 사업형 회계 중 수익창출활동이 없는 기금의 경우 개선방안

기금의 경우에는 사례분석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회계실체를 단순히 사업형 하나로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각 기금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분명한 회계구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중 융자와 보증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창출이 주요활동이 아닌 행정형 회계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앞서 논의한 기업특별회계와는 그 본질이 다르므로 별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해당 기금의 경우 행정형 회계와 재정운영표의 작성목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재정운영표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재정운영표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순원가 정보활용 방안 제고

우선 재정운영표의 활용도 및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 시점 이전에 프로그램 예산 편성시 사업별로 설명력이 있도록 잘 편성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면 프로그램 내 사업내역으로 집계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별 총원가의 성질별 분류가 가능해야 하며, 프로그램 수익 역시 발생원천이나 성질별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순원가 명세서나 주석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비의 간략한 표시

관리운영비는 지나치게 상세화 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명세 등을 주석 공시하도록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프로그램순원가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3) 순자산변동 내역을 포함하는 방안

자본유지를 목적으로 수취한 출연금 등의 경우 사업형 회계의 경우에도 해당 비교환수익이 순자산변동표에 집계되므로 재정운영표 상에서 비교환수익 전체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환수익 명세를 주석공시하거나 미국사례처럼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를 혼합하여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운영결과 표시방법 변경

앞선 사례 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는 순원가 - 비교환수익의 구조로 되어 있어 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됨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인용하여 요약 설명할 경우에도 재정운영결과가 아닌 당기순손익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표 양식상에서 차감순서를 바꿔 비교환수익에서 순원가를 차감하여 이익일 경우 재정운영결과를 (+)로 표시하고 기금잔액의 증가로, 손실일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기금잔액의 감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매우 단순한 변경사항처럼 보이나, 계정과목 명이 중립적인 '재정운영결과'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운영표를 살펴보지 않고는 재정운영결과의 부호가 나타내는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방법을 변경하면 제공된 정보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5) 일시적으로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음자나 보증수수료 등)

일시적인 수익활동 등으로 인한 수익사업 등의 규모가 큰 경우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를 병행하여 필수보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를 과거 결산 시 작성해왔으므로 그 정보산출비용이 적고 계속성 있는 정보로서 이에 대한 정보이용자

의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정운영표의 순원가 정보가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사업형 회계의 손익계산서 보충공시 의무화

사업형 회계 내에는 다양한 특징의 회계실체들이 혼합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는 기업특별회계와 일부기금, 순원가 정보가 중요한 기금, 연금이나 신탁회계의 특성을 가지는 기금 등 사업형 회계를 위한 재정운영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계실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구분된 회계실체 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원가계산준칙의 수정, 결산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2010년 결산 시점까지 모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충분한 검토와 사례조사를 통해 각 회계실체별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운영표 작성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장기과제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업형 회계로 분류되는 모든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기업회계방식 손익계산서의 보충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회계방식 손익계산서는 과거부터 사업형 회계실체들이 작성해 온 정보로서 추가적인 정보산출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영업이익 등의 정보가 필요한 일부 사업형 회계의 경우 정보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경우 비교환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분법, 이연법인세회계 등 회계기준의 차이가 있어 차이 분석 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국가회계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적절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국가회계기준 센터의 제언

국가회계기준의 도입초기임을 고려하여 2009년도 수행한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나 재정운영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는 미흡하고 관리운영비 등의 부수적 정보는 지나

치게 상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기준 자체의 변경이 아닌 표시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도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회계실체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운영표 표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명확한 회계실체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사업형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손익 등의 정보가 필요한 회계에 대해서는 행정형 재정운영표와 구분되는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형 회계 내 수익창출형 재정운영표 작성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장 적합한 재정운영표 양식을 확정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수익창출형 회계의 분류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재정운영표의 복수 양식에 대한 합의도 없으므로 2010년부터 재정운영표 양식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손익계산서를 병행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운영표 활용 및 이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2]재무정보 공시 내용 확대방안

2010. 10. 13

국가회계기준센터

1. 서론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시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국가통합재무제표의 국회 제출이 내년으로 다가와 관련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11년 이후에는 각 소관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를 통합시킨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슈가 향후 1~2년간 관련부처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 따른 재무제표 중 주석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재무제표 구성서류보다 관심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는 주석이 그 성격상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반복적인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되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국가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함에 있어 주석은 오직 동일한 사안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 관심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등 최근 국제적 추세는 보다 상세한 주석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보고기관의 재무현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워크숍에서는 2009년도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 주석 공시 현황(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2009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과 해외 발생주의 적용 국가의 주석 공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보공시 내용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나,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재무제표의 작성수

준 및 dBrain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제약을 받는다.

나아가 올해와 내년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차질 없는 도입 준비를 위해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 2009 회계연도 주식 작성 현황 분석

여기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제출이 유예되지 않은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주식 작성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준비 현황과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1.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한 주식 공시사항

국가회계기준에서는 10개 조항의 규정에 걸쳐 재무제표 주식에 공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식으로 공시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충당부채”와 같이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장기충당부채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만큼 추정에 사용한 가정치들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게 된다.

다음은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공시사항이다.

- ①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식으로 공시한다.(제6조 제1항 제2호)
- ② 자산의 감액명세 :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식으로 표시한다.(제32조 제3항)
- ③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외 적용의 경우) :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식으로 표시한다.(제35조 제2항)
- ④ 압수품 및 몰수품 : 압수품 및 몰수품의 명세는 주식으로 표시한다.(제36조 제2항)
-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제43조 제2항)

⑥ 외환자산·부채 : 중요한 외환자산과 외환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제47조 제3항)

⑦ 파생상품의 평가 :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제49조 제3항)

⑧ 우발상황 : 우발상황은 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제50조 제2항)

⑨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그 내용,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제51조 제1항, 제2항)

⑩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환자산 및 외환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함.)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이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5조)

2.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 규정한 주석 공시 사항

정부결산작성지침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결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한 주석 공시 사항에 대한 양식도 제시하여 재무제표 작성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보다는 결산작성지침의 예시주석문구를 기재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결산작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거 제공하던 주석사항을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주석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①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 재무보고의 목적달성을 위해 재무제표의 작성주체에 대한 파악과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기 위해 표시

②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 국채 및 공채의 액면금액 및 차입금 기말장부가액의 상환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

- ③ 장기충당부채
- ④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⑤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 ⑥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⑦ 순자산조정명세
- ⑧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각종지침에서 규정한 주식 공시 사항

국가회계기준 하위 규정인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②, ⑤, ⑥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식사항과 동일하다.

① 재고자산 : 재고자산 평가시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재정상태표 회계처리지침 중 재고자산회계처리 해설)

② 연금수익 :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지시에 연금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을 주석으로 공시(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③ 몰수금수익 : 몰수품 중 비화폐성자산은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주석으로 기재(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④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 우발손실의 경우 1)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 관련 내용 주석표시 2)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이때 주석에는 손실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손실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사유,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등을 기재

우발이익의 경우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⑤ 국가 고유의 재정 기능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공시(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2)

⑥ 세입·세출외 현금 : 보관금과, 산지복구비, 공탁금 및 입찰보증금 등의 경우 관리목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도의 주석 등으로 결산서에 포함(세입·세출외 거래 회계처리지침)

⑦ 압수품 및 몰수품 : 압수품과 몰수품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세입·세출외 거래 회계처리지침)

참고로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주석공시사항,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석 공시사항

1.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장기충당부채
4.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6.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순자산조정명세
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재고자산 평가시 예외사항
10.수납시점 인식 연금수익
11.비회폐성자산 몰수금수익
12.우발손실(발생이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확실하나 합리적 추정 불가능한 경우)
13.우발이익(발생이 확실하고 합리적 추정 가능한 경우)
14.정부재정기능에해당되지않으며,재무정보왜곡가능성있는자산, 부채
15.관리 목적에 따라 주석기재 가능한 세입 세출 외 현금

16. 압수품 및 몰수품

② 필수보충정보

결산주체	필수보충정보명
기금관리주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중앙관서의 장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국세징수활동표
	3.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5.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부속명세서

결산주체	부속명세서명
기금관리주체	1. 금융상품명세서
	2. 단기투자증권명세서
	3. 장기투자증권명세서
	4. 미수채권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6. 일반유형자산명세서
	7. 무형자산명세서
	8. 국채및공채명세서
	9. 차입금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금융상품명세서
	2. 단기투자증권명세서
	3. 장기투자증권명세서
	4. 미수채권명세서

	5.대여금명세서
	6.일반유형자산명세서
	7.무형자산명세서
	8.국채및공채명세서
	9.차입금명세서
중앙관서의 장	1.금융상품명세서
	2.단기투자증권명세서
	3.장기투자증권명세서
	4.미수채권명세서
	5.대여금명세서
	6.일반유형자산명세서
	7.사회기반시설명세서
	8.무형자산명세서
	9.국채및공채명세서
	10.차입금명세서
	11.재원별 원가명세서

4.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주석 내용 분석

09년 결산보고서 상 공시된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주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산작성지침과 다르게 주석을 작성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주석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하였다.

① 미래와 관련된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와 불확실성 추정의 주요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다수 기금의 회계정책의 공시가 재무제표 작성 시 미래와 관련된 추정과 가정이 수립되고, 결과가 추정 및 가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는 단순한 주석만을 기재하였다. 장기충당부채나 현재가치할인차금¹⁸⁾의 경우 계산근거나 발생시점, 할인을 정보 등에 대한 내역 없이 단순히 기중 증감액만을 기재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했다는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투자목적의 투자증권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또한, 평가손익 등을 포함하는 순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자세한 공시¹⁹⁾가 없었다. 이는

18)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했다는 내용만 기술, 수출보험기금은 할인을 정보제시

19) 공시는 이루어지나 매우 단순한 정보임

기금들이 해당 재무제표와 관계없는 기준 또는 회계정책에 대해 통상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처럼 보인다.

<예시. 주식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감소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731,898)	80,847,797	74,642,323	5,473,576
투자증권평가손익	-	13,950	4,405	9,545
기타순자산의증감	(731,898)	80,833,847	74,637,918	5,464,031

③ 건설중인자산의 경우, 내용과 당기지출액 등의 정보가 중요함에도 결산 작성지침에 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이를 주식으로 공시한 사례가 1곳(관세청)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은 그 종류와 길이가 매우 다양한데, 이는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그리고 가정 선택의 근거나 가정 그 자체를 공시하기 위하여 주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문구의 사용 및 단순한 정보의 기재로 접근하고 있어, 재무제표의 주식에 공시되는 정보의 양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공시가 재무제표를 유용하지 않게 한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은 주식 등 재무정보 공시 확대를 위하여 현재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상황을 검토한 것이며, 다음에서는 이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좋은 참고사항으로 삼고자 한다.

Ⅲ. 발생주의 도입 국가별 주식 작성현황 비교요약

발생주의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도입초기에 겪을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부처별)²⁰(이하 “주요 5개국”)의 주식 공시내용 선택 현황, 양식 기재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요 5개국의 주식 공시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 각국별 주식 공시내용 분석자료>

20) 영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통산부 재무제표를 이용했음. 정부통합재무제표는 아직 준비 중에 있어 부처별 자료를 이용함.

국 가	자 료	비 고
미국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the years Ended September 30, 2009 and 2008	
캐나다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9 Section 2.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Report and Observations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캐나다 공공부문 연간보고서 섹션 2. 재무제표 부분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Resource Accounts 2009-10	정부부처 중 통산부 재무제표를 이용함. 정부통합재무제표는 준비 중임.
호주	①호주회계기준서 Compiled Accounting Standard AASB 1049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 ②호주국가통합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9' ③Finance Minister' s Orders	
뉴질랜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9	

주요 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① 재무제표 주석 내용의 작성 방식은 설명 방식(미국)에서부터 표 형식(호주)에 이르기 까지 나라별로 상이하다.

-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통합 재무제표를 NZIFRS(뉴질랜드 채택 IFRS)에 따라 작성하며 민간기업 사업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다.

- 호주의 경우에도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정부부문에 도입함으로써 국가통합 재무제표의 형태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일반기업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다만 부문별 정보에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의 부문별 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여 정부 부문별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영국의 경우는 자원회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과의 연계를 도모하

고 있으며 IFRS를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언어적 설명과 전기비교표시 형식의 표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회계기준이 부채 및 재정적자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 결과 중에서도 비용 및 누적재정적자에 관련한 주석사항이 상세하고 자산측면보다는 부채 관련 주석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캐나다의 경우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을 통해 회계실체에 대한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어 재무제표 해석 시 도움이 된다.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재무부가 보고하는 연례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결통합재무제표가 마련되기 위해 필요한 일부 계정들의 독립적 재정상태표나 순자산잔액변동표 등을 주석에서 표로 보고하기도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계정의 내역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인 경우 담당 연방기관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사항에서 보고하고 있다.

②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의 경우와 같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민간부문에 지출된 재정의 공시는 나라별로 달랐다. 특히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주석 5, 6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AIG, 자동차업계 등에 대한 투자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 주석 공시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¹⁾

항 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부처별)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침	○	○	○	○	○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	○	○	○	○
주요수익인식기준	○	○	○	○	○
기타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	○	○	○
금융상품의 종류	○	○	○	○	○
사용제한 여부	○	○	X	X	X
미수채권잔액 및 미수국세 내역명세	○	○	○	○	○
대손충당금 관련 내용	○	○	○	X	X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	○	○	○	X
평가액 및 평가손실충당금	○	○	○	X	X
원가결정방법	○	○	○	○	X
평가방법	○	○	○	○	X
만기관련 정보	○	○	X	○	X

감액손실	○	○	○	X	X
투자자산 명세	○	○	X	○	○
공시지가 등 공정가액 정보	X	○	○	X	X
장부가액의 당기 변동내역(취득, 처분, 감가상각 및 기타증감)	○	○	○	○	○
담보제공자산 등	X	○	X	○	X
감액손실	X	○	X	○	X
건설중인 자산	○	○	○	X	X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상각률, 잔존가액	○	X	○	○	X
담보제공자산	X	X	X	○	X
유형자산감액손실	X	X	○	○	X
기타자산 명세	○	X	○	○	○
기타자산의 회계처리방법	○	○	X	○	X
유동부채 명세(차입처 및 차입 용도, 이자율)	○	X	△	○	X
장기차입금 명세서(차입처별 차입액, 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	○	○	△	○	X
국·공채 명세(종류, 만기, 이자율, 상환방법 등)	○	○	△	○	X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액 및 전임직원 퇴직금 소요액	○	X	○	○	X

항 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부처별)
기중퇴직금지급액	○	X	X	○	X
연금충당부채 설정잔액 및 지급시의 소요예산액	○	○	○	○	X
연금충당부채의 지급예상기한 스케줄	○	○	X	○	X
리스종류별 가액	X	○	○	○	○
리스종류별 계약조건(최소리스료 등)	X	○	○	X	X
보험가입자산 명세(보험종류 및 금액 포함)	X	X	X	○	○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보증, 담보제공내역	○	○	○	○	○
주요 약정사항	○	○	○	○	○
충당부채의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내역	○	X	○	○	○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유출 예상시기	○	○	X	○	○
충당부채 관련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	X	X	○	○
우발부채의 성격 설명 및 추정금액	○	○	○	○	○

21) 상기 자료는 해당 재무제표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식공시사항과 다를 수 있으며, 다른 부처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음.

우발부채 관련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	X	○	○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	○	○	○
계류중인 소송사건	○	○	○	○	○
우발자산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	○	○
기타부채 명세	○	○	○	○	X
파생상품 명세	○	○	X	○	○
파생상품 평가방법	○	○	X	○	○
파생상품 평가손익	○	○	X	○	○
기타 파생상품 관련 계약내용의 특징	○	○	X	○	○
순자산 명세	○	X	○	○	X
외화환산손익 명세	X	○	○	○	○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과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수익/비용 반영여부)	○	X	X	X	X
중대한 오류인 경우 그 판단 근거	○	X	X	X	X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	X	X	X	X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전진처리 여부와 변경내용 및 정당성	○	X	○	X	X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X	○	X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재무제표상의 수정금액	○	X	○	X	○

이상 주요 5개국의 주석 공시내용 작성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세부적인 양식기재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석공시 범위 및 내용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요 5개국 중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부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그 특성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점, 영국의 경우 국가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지 않는 점, 캐나다의 경우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을 입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 주석사례가 없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주석사례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IV. '09 미국 연방정부 주식 세부 분석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등에서 각각 공시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요구와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에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09년 미국 연방정부의 주석 공시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석공시 범위 및 내용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09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내용 분석은 재무제표 주석 기재 순서에 따랐으며, 주석1. 유의한 회계처리 요약(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은 우리나라의 주석과 마찬가지로 회계처리기준을 요약 기술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석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현금(Cash)과 국제통화자산(International Monetary Asset, 금 및 외화자산)으로 구분하고, 현금은 다시 사용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사례 1-1 참조).

또한,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현금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현금은 재무부가 징세, 기타 수입, 채권발행 등으로 발생한 현금과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한되지 않은 현금으로 구성
- 사용이 제한된 현금은 법률, 규정, 계약에 의한 예치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주로 SFP와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으로 발생. 또한 International monetary assets은 IMF의 미화 유보포지션과 SDRs(특별 전도금 권리)를 포함

<사례 1-1. 사용제한여부와 국제통화자산에 따른 구분 사례>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Unrestricted cash:		
Cash held by Treasury for Governmentwide operations	104.0	64.3
Other	8.4	6.5
Restricted cash:		
Cash held by Treasury for Governmentwide operations	165.0	300.0
Other	17.7	14.0
Total cash.....	295.1	384.8
International monetary assets		
Gold	71.4	14.3
Foreign currency.....	11.1	11.0
Foreign currency.....	15.6	14.4
Total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393.2	424.5

2. 미수채권(Accounts and Taxes Receivable, Net)

■ 계정과목 설명

대차대조표의 미수채권은 미수금(Accounts Receivable)과 미수국세채권(Taxes Receivable)로 구분하여 주석에 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은 정부외부의 실체로부터 상품이나 용역판매에 대한 대가나 각종 세금들에서 발생한 현금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에는 미수금 총당금을 차감한 순액을 표시한다. 총당금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총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관마다 다양하지만, 보통 과거경험이나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재평가를 사용한다. 측정방법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샘플을 개별적으로 연령분석하고, 전체 미수금 중 수취 가능한 미수금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미수국세채권은 납세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나 법원이 부담시키기로 결정한 때의 각종세금들이 해당된다. 재무제표에는 납세자나 법원이 동의한 금액이 아니거나, 납세자의 사망, 파산, 지불불능 등으로 정부가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는 미수국세채권 총당금을 차감한 순액을 표시한다.

■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식에서는 미수채권을 미수금(Accounts Receivable)과 미수국세채권(Taxes Receivable)으로 구분하여 채권 총액과 충당금 총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사례 2-1 참조).

<사례 2-1. 미국연방정부 미수채권 주식 사례>

Accounts and Taxes Receivable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Accounts Receivable:		
Gross accounts receivable	80.2	77.1
Allowance for uncollectible accounts	(20.9)	(15.2)
Accounts receivable, net	59.3	61.9
Taxes Receivable:		
Gross taxes receivable	131.2	115.5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100.3)	(84.4)
Taxes receivable, net	30.9	31.1
Total accounts and taxes receivable, net	90.2	93.0

3. 용자대여금 및 주택저당채권, 보증채무 (Loans Receivable, Mortgage Backed Securities, and Loan Guarantee Liabilities, net)

■ 계정과목 설명

연방정부의 재무제표 내에서 용자대여금, 주택저당채권, 그리고 용자보증부채 계정은 시장의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운용되며 연방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용자사업을 표시한다. 1991년 이후부터 추정된 순현재가치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보고하여 왔다. 원금과 순현재가치와의 차이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a subsidy cost allowance)으로 인식한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용자 및 보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용자방식은 재무부의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구매 프로그램과 같은 자금조달약정이고 두 번째로 많은 용자유형은 교육부의 연방학자금 대출과 같은 직접 용자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교육부의 연방직원가족교육관련(FEEL) 용자프로그램, 농림부의 전력용자와 같은 용자보증프로그램이다. 용자대여금 및 주

택저당채권, 보증채무는 총자산 중 20%('09년기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계정과목이다.

■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석에서는 용자 및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내역,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사례 3-1 참조).

- 직접적인 용자와 용자보증 프로그램의 목적은 민간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명시
- 용자 및 보증 사업별로 미상환 액면가액,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미상환 금액, 용자보조원가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를 제공

<사례 3-1. 미국연방정부 용자 및 보증채무의 주석 사례>

Note 4. Loans Receivable, Mortgage Backed Securities, and Loan Guarantee Liabilities, Net

	Face Value of Loans Outstanding		Long-term Cost off(Income From) Direct Loans and Defaulted Guaranteed Loans Outstanding		Loans Receivable and Mortgage Backed Securities, Net		Subsidy Expense/ (Income) for the Fiscal Year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In billions of dollars)							
Direct Loan and Defaulted Guaranteed Loan Programs as of September 30								
GSE Mortgage Backed Securities								
Purchase Program - Treasury.....	173.3	3.3	(11.1)	(0.1)	184.4	3.4	(12.9)	(0.1)
Federal Direct Student Loans - Education.....	157.8	124.4	4.5	14.2	153.3	110.2	(9.6)	5.2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 Education.....	84.0	32.7	3.1	8.2	80.9	24.5	(4.1)	(0.2)
Electric Loans - USDA.....	40.0	37.5	2.3	2.0	37.7	35.5	0.2	0.5
Rural Housing Services - USDA.....	28.4	27.6	6.9	7.0	21.5	20.6	0.3	0.3
Water and Environmental Loans - USDA.....	10.4	9.9	0.8	0.9	9.6	9.0	(0.1)	0.2
Farm Loans - USDA.....	7.3	6.7	0.3	(0.4)	7.0	7.1	0.8	(0.4)
Disaster Loan Programs - SBA.....	8.4	8.6	1.6	1.5	6.8	7.1	-	-
Export-Import Bank Loans.....	7.7	6.4	3.1	2.6	4.6	3.8	(0.1)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Loans.....	5.4	4.9	0.8	(0.8)	4.6	5.7	1.1	1.1
Food Aid - USDA.....	6.1	6.7	1.9	2.8	4.2	3.9	(0.4)	(0.3)
Telecommunications Loans - USDA.....	4.1	4.0	-	(0.1)	4.1	4.1	0.2	0.2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ans.....	5.6	6.3	1.8	2.3	3.8	4.0	-	-
Housing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 HUD.....	3.5	3.9	-	-	3.5	3.9	-	-
All Other Programs.....	19.4	15.5	6.5	4.5	12.9	11.0	1.3	0.4
Total Direct Loans and Defaulted Guaranteed Loans.....	561.4	298.4	22.5	44.6	538.9	253.8	(23.3)	6.9

4. TARP 대출금 및 투자지분액(순액)
(TARP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Net)

■ 계정과목 설명

TARP란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약자로 부실기업 등의 회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AIG 및 자동차업계 등의 재정이 부실해짐에 따라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TARP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SFFAS No.222)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액면가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액은 'subsidy allowance'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 주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식에서는 TARP 대출금 및 투자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TARP는 EESA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에 따라 개설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재무부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증권 및 타 부실자산의 매입과 보증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재무부에서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증권을 받게 되는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TARP는 국민들과 기업을 상대로 경제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보증 및 직접자금 대여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경제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투자형태는 아래 사례 4-1과 같다.

22) SFFAS No.2 'Accounting for Direct Loans and Loan Guarantees'

<사례 4-1. 프로그램별 투자형태 연방정부 주석 사례>

Program	Program Type
Capital Purchase Program	Equity Investment/Subordinated Debenture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Investment Program *	Equity Investment
Targeted Investment Program	Equity Investment
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	Equity Investment and Direct Loan
Consumer and Business Lending Initiative	Direct Loan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Equity Investment and Direct Loan
Asset Guarantee Program	Guarantee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Expenditure

* Formerly known as the Systemically Significant Failing Institutions Program.
 **HAMP is not designed to recoup money spent on loan modifications. As such, this program does not include direct loans, equity investments, or asset guarantees.

프로그램별 투자형태 이외에도 투자형태별 금액 내역(사례 4-2 참조)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투자형태 금액내역의 원금과 현재가치 평가액, 이자비용(수익) 계상 내역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사례 4-3참조).

<사례 4-2. 투자형태별 금액 연방정부 주석 사례>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Net	237.9
Asset Guarantee Program	1.8
Total	<u>239.7</u>

<사례 4-3. 프로그램별 투자형태 금액 연방정부 주석 사례>

The table below is a summary of the TARP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as of September 30, 2009				
(In billions of dollars)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Subsidy Cost Allowance	Net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Subsidy Expense (Income) for the Fiscal Year
Capital Purchase Program	133.9	7.8	141.7	(15.0)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Investment Program	43.2	(30.0)	13.2	30.4
Targeted Investment Program	40.0	0.3	40.3	(1.9)
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	73.8	(31.5)	42.3	30.4
Consumer and Business Lending Initiative	0.1	0.3	0.4	(0.3)
Total	<u>291.0</u>	<u>(53.1)</u>	<u>237.9</u>	<u>43.6</u>

또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과 진행상황, 중요사항 등을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어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5.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Beneficial Interest in Trust)

■ 계정과목 설명 및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석에 따르면,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Beneficial Interest in Trust)은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에 투자된 공적자금 중 AIG에 투자된 정부자금에 대한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설립된 펀드의 단일의 수혜자가 정부이며, 펀드의 보고실체는 재무부이고, 펀드의 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AIG 주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정부의 투자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재고자산과 그 관련자산 (Inventory and related property, net)

■ 계정과목 설명

재고자산은 연방정부와 관련한 기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 재화를 의미하여 재공품, 생산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포함한다. 재고자산 외의 '관련 자산'은 비축자산, 압류자산, 몰수자산, 저당자산, 가격안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산 등으로 세분화된다.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주석)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며, 재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부의 자산의 경우 일반회계기준이 아닌 역사적인 재판매원가와 유사하게 하기 위해 차익과 차손을 잡는 방법인 수정된 현행대체원가법(LAC)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초과, 진부화, 사용불능 재고자산들은 순실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행대체원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사적 원가와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차익 및 차손을 조정한다는 사실과 재고자산은 후입선출법(LIFO)을 제외한 원가흐름 가정에 따

라 측정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비축자산은 역사적 원가, 현행 대체원가, 표준원가법, 소매법으로 평가되며 비축품의 경우 현행대체원가나 표준원가를 사용하더라도 보유손익을 조정하지 않는다.

■ 주식기재 내용

재고자산의 필수공시항목은 재고자산의 일반적 구성, 가치결정기준, 평가방법 및 원가흐름 가정, 전기회계처리방법 변경 시 그 사실, 재고자산 유형 각각의 계정잔액, 미래 판매목적의 저장용 재고자산, 초과, 진부화, 사용불능 재고자산, 수선을 위해 보유한 재고자산, 판매제한 사항, 재고자산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기준, 기준 변경 시 그 사실 등이다.

연방정부는 재고자산만을 보고하지 않고, '재고자산과 관련자산'이라고 묶어서 보고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본문에는 한 줄로 표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석을 통해 공시한다(사례 6-1 참조). 또한 초과, 진부화, 사용불능 재고자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과 명세로 제시하고 있어, 재고자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가능성에 맞춰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와 구분하여 전기비교표 형식으로 명세정보가 공시되고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기타 관련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례 6-1. 미국연방정부 재고자산 주석 사례>

Note 7.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Net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Defense	All Others	Total	Defense	All Others	Total
	2009			2008		
Inventory purchased for resale	87.8	0.8	88.6	101.1	0.8	101.9
Inventory and operating material and supplies held for repair	46.0	0.6	46.6	44.1	0.6	44.7
Inventory—excess, obsolete, and unserviceable	7.8	-	7.8	7.8	-	7.8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held for use	128.9	5.3	134.2	131.7	4.9	136.6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held in reserve for future use	-	0.9	0.9	-	0.2	0.2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excess, obsolete, and unserviceable	3.4	0.1	3.5	3.6	0.2	3.8
Stockpile materials	-	47.2	47.2	-	46.1	46.1
Stockpile materials held for sale	0.7	0.2	0.9	0.7	0.2	0.9
Other related property	1.0	1.1	2.1	0.7	1.0	1.7
Allowance for loss	(46.9)	(0.3)	(47.2)	(53.7)	(0.4)	(54.1)
Total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net ..	228.7	55.9	284.6	236.0	53.6	289.6

Inventory purchased for resale is the cost or value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purchased by an agency for resale. DOD values approximately 68 percent of its resale inventory using the moving average cost (MAC) method. An additional 6 percent (fuel inventory) is reported using the first-in-first-out method. DOD reports the remaining 26 percent of resale inventories at an approximation of historical cost using LAC adjusted for holding gains and losses. The LAC method is used because its legacy inventory systems do not maintain historical cost data.

Please refer to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DOD for significant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its inventories.

Inventory and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held for repair are damaged inventory that require repair to make them suitable for sale (inventory) or is more economic to repair than to dispose of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Inventory—excess, obsolete, and unserviceable consists of:

- Excess inventory that exceeds the demand expected in the normal course of operations and which does not meet

7.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 계정과목 설명

연방정부의 유형자산 (PP&E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은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일반 PP&E, 국방부 PP&E, 유산자산, 수탁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일반 PP&E(국방부포함)와 유산자산, 수탁토지 관련 주석내용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항목을 달리 하여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이번 절에서는 주석으로 제공되는 일반유형자산의 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재무제표에는 중요한 회계처리 요약(주석)을 통해 유형자산의 구성자산, 국방부의 전비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국방부의 전비품은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기록한 측정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방부 전비품(예, 전함, 전투기, 탱크 및 무기 등) 관련 특정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 등을 표시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종류별로 측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유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시요건으로는 주요 유형자산 종류별 원가,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및 장부가액,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기간 중 금액기준의 변경을 포함한 자본화 금액기준, 유형자산 관련 제한사항 등이다.

■ 주석기재 내용

<사례 7-1>에서 보듯이 국방부와 국방부 외로 구분하여 자산의 원가와 감가(감모) 상각누계액, 순액을 구분하여 자산유형별로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재무제표 본문 상에서는 유형자산 관련 항목이 자산종류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주석을 통해 명세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 본문 상에서 자산종류별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표시하므로 미연방재무제표 주석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사례 7-1. 미국연방정부 주석 사례>

Note 8.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In billions of dollars)	Cost		Accumulated Depreciation/Amortization		Net	
	Defense	All Others	Defense	All Others	Defense	All Others
Buildings, structures, and facilities.....	191.7	201.4	108.0	104.6	83.7	96.8
Furniture, fixtures, and equipment.....	877.5	151.4	446.9	91.6	430.6	59.8
Construction in progress.....	30.8	41.2	N/A	N/A	30.8	41.2
Land.....	10.5	11.7	N/A	N/A	10.5	11.7
Internal use software.....	9.0	15.0	5.6	7.5	3.4	7.5
Assets under capital lease.....	1.0	2.8	0.6	1.3	0.4	1.5
Leasehold improvements.....	0.7	5.7	0.5	2.8	0.2	2.9
Othe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0.1	8.5	-	5.5	0.1	3.0
Subtotal.....	<u>1,121.3</u>	<u>437.7</u>	<u>561.6</u>	<u>213.3</u>	<u>559.7</u>	<u>224.4</u>
Total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u>1,559.0</u>		<u>774.9</u>		<u>784.1</u>

국방부의 유형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반유형자산과 전비품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측정원가 방식도 역사적 원가가 아닌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축적된 원가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금액의 실재성도 충분하게 제공된다고 볼 수 없다.

7.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asset)

■ 계정과목 설명 및 주석기재 내용

사회기반시설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경우 일반 PP&E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FFAS 6번 기준서」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준서 「Appendix B 유형의 제시」 중 예시 3B를 통하여 공공용지상의 도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포장도로나 자갈도로 등은 감가상각이 필요한 일반 PP&E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내용상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분리 보고되는 항목은 없다.

연방정부가 투자하되, 연방정부의 소유가 아닌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예를 들어,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는 연방정부 재무제표 내 “순원가보고서” 상의 비용으로 계상²³⁾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을 자산화하는 미국지방정부의 사례를

23) 필수보충정보인 수탁책임보고서를 통해서 수탁책임 투자액 (Stewardship Investments)중 연방정부소유가 아닌 유형 자산(Non-Federal Physical Property)으로 공시된다.

추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지방정부

미국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자산은 고정자산과 동일한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공시된다. 주석정보에는 기초와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역사적 역사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 및 판매 혹은 기타 처분에 대한 내용, 당기 감가상각비가 각 기능별로 배부된 금액에 대해서 구분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지방정부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자본화와 그러한 자산의 실질내용연수 추정(감가상각비 계산 시 사용)을 위한 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 요약을 통해 주석 공시한다.

<사례 7-2. 미국지방정부 주석 사례>

NOTE 7: CAPITAL ASSETS

Table 19 summarizes the capital activity for the primary government, which includes \$6.2 billion in capital assets related to capital leases.

Table 19
Schedule of Changes in Capital Assets – Primary Government
 June 30, 2009
 (amounts in thousands)

	Beginning Balance (Restated)	Additions	Deductions	Ending Balance
Governmental activities				
Capital assets not being depreciated				
Land	\$ 16,043,103	\$ 313,653	\$ 1,967	\$ 16,354,789
State highway infrastructure	57,916,204	1,272,175	—	59,188,379
Collections	21,631 *	1,985	37	23,579
Construction in progress	7,024,461	2,772,308	2,391,020	7,405,749
Total capital assets not being depreciated	81,005,399	4,360,121	2,393,024	82,972,496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Buildings and improvements	17,100,177	923,206	216,047	17,807,336
Infrastructure	610,405	111,330	—	721,735
Equipment and other assets	4,330,719	393,289	222,163	4,501,845
Total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22,041,301	1,427,825	438,210	23,030,916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for:				
Buildings and improvements	5,525,135	466,791	113,965	5,877,961
Infrastructure	191,551	36,639	—	228,190
Equipment and other assets	3,159,738	359,070	214,852	3,303,956
Total accumulated depreciation	8,876,424	862,500	328,817	9,410,107
Total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net	13,164,877	565,325	109,393	13,620,809
Governmental activities, capital assets, net	\$ 94,170,276	\$ 4,925,446	\$ 2,502,417	\$ 96,593,305
Business-type activities				
Capital assets not being depreciated				
Land	\$ 47,489	\$ 2,197	\$ —	\$ 49,686
Collections	29 *	—	—	29
Construction in progress	1,876,245 *	495,232	389,822	1,981,655
Total capital assets not being depreciated	1,923,763	497,429	389,822	2,031,370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Buildings and improvements	7,436,046	526,834	56,993	7,905,887
Infrastructure	61,367	9,517	—	70,884
Equipment and other assets	112,671 *	9,328	6,816	115,183
Total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7,610,084	545,679	63,809	8,094,954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for:				
Buildings and improvements	3,042,396	169,445	48,136	3,163,705
Infrastructure	15,642	1,811	—	17,453
Equipment and other assets	77,987 *	11,067	6,158	82,896
Total accumulated depreciation	3,136,025	182,323	54,294	3,264,054
Total capital assets being depreciated, net	4,474,059	363,356	9,515	4,827,900
Business-type activities, capital assets, net	\$ 6,397,822	\$ 860,785	\$ 399,337	\$ 6,859,270

* Not restated

고정자산과 구분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특이한 주석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기반시설자산과 관련하여 수정접근법을 선택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필수보충정보를 통해 상세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7-3. 미국지방정부 필수보충정보 사례>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ets Using the Modified Approach

A. Infrastructure Asset Reporting Categories

B. Condition Baselines and Assessments

The State's established condition baseline and actual BHI for fiscal years 2006-07 through 2008-09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Fiscal Year Ending June 30	Established BHI Baseline*	Actual BHI
2007	80.0	94.3
2008	80.0	94.3
2009	80.0	94.1

* The actual statewide Bridge Health Index (BHI) should not be lower than the minimum BHI established by the State.

The following table provides details on the State's actual BHI as of June 30, 2009.

BHI Description	Bridge Count	Percent	Network BHI
Excellent	6,258	51.02 %	99.9
Good	4,727	38.54	96.1
Acceptable	895	7.30	85.4
Fair	214	1.74	76.1
Poor	172	1.40	62.3
Total	12,266	100.00 %	

The State's budgeted and actual preservation cost information for the most recent and four previous fiscal years i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Fiscal Year Ending June 30	Estimated Budgeted Preservation Costs (in millions)	Actual Preservation Costs (in millions)
2005	\$ 1,430	\$ 1,270
2006	2,406	2,038
2007	2,694	2,015
2008	2,956	1,318
2009	2,910	774

2009년도 작성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제표의 순자산보고서에서 고정자산 중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구분하여 본문에 표시하고 주석을 통해 고정자산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행정형활동과 사업형활동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여부(being or not being depreciate)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가회계기준의 국가통합재무제표 본문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사례 7-2 참조)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제표 상 주석에는 그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상세내역은 없으며, 필수보충정보를 통해 “수정접근법”을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자산

에 대한 현행상태 베이스라인과 측정수준을 사회기반시설 종류별(도로, 교량)로 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기준과 발생주의 기준으로 측정된 유지보전 비용을 비교하여 표시함으로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서비스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최근 5년간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사례 7-3 참조).

8.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Securities and Investments)

■ 주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 주식에서는 유가증권 및 투자상품을 만기보유증권(held-to-maturity), 매도가능증권(available-for-sale),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 and investments)으로 구분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 매도가능증권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차감한 공정가치,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한다.

또한 유가증권 및 투자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거나, 기관별로 나누어 공시한다.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것은 크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내용을 공시하고, 각각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도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관별로 나누는 것은 별도의 컬럼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 기관(agency)별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투자상품의 내역을 공시한다(사례 8-1 참조).

<사례 8-1. 미국연방정부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주식 사례>

Securities and Investments as of September 30, 2009

(In billions of dollars)	By Category									Total
	Held-to-Maturity			Available-for-Sale			Trading			
	Cost Basis	Unamortized Premium/Discount	Net Investment	Cost Basis	Unrealized Gain/Loss	Fair Value	Cost Basis	Unrealized Gain/Loss	Fair Value	
Fixed/debt securities:										
Non-U.S. Government.....	0.2	-	0.2	12.1	0.4	12.5	2.7	0.3	3.0	15.7
Commercial.....	-	-	-	-	-	-	0.1	-	0.1	0.1
Mortgage/asset backed.....	-	-	-	-	-	-	2.9	(0.1)	2.8	2.8
Corporate and other bonds.....	-	-	-	-	-	-	8.7	(0.1)	8.6	8.6
All other fixed debt securities.....	1.1	-	1.1	-	-	-	1.5	0.1	1.6	2.7
Equity securities:										
Common stocks.....	-	-	-	-	-	-	0.9	(0.1)	0.8	0.8
Unit trust.....	-	-	-	-	-	-	17.0	5.1	22.1	22.1
All other equity securities.....	-	-	-	3.0	-	3.0	2.0	(0.2)	1.8	4.8
Other.....	2.2	-	2.2	-	-	-	33.2	0.1	33.3	35.5
Total Securities and Investments.....	3.5	-	3.5	15.1	0.4	15.5	69.0	5.1	74.1	93.1

Securities and Investments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By Agency	
	2009	2008
Securities and Investments: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43.6	33.6
Railroad Retirement Board.....	22.2	24.9
Exchange Stabilization Fund.....	13.6	10.6
Tennessee Valley Authority.....	8.0	7.9
All other.....	5.7	2.6
Total Securities and Investments.....	93.1	79.6

9. 파생상품(Derivatives)

■ 계정과목 설명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에 따른 파생상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에 대해서만 파생상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파생상품 정의와 동일하다.

<미국연방정부 파생상품의 정의>

-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또는 지급규정이 있을 것
- 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할 것
- 다. 차액결제가 가능할 것

■ 주식기재 내용

파생상품 관련 주식공시 사항은 FASB 규정을 준용하는 바, FASB ASC Section 815 Derivatives and Hedging에 따르면, 1)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사유 및 방법 (how and why), 2) 파생상품 및 관련된 헷지대상 항목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3) 파생상품 및 관련된 헷지대상 항목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파생상품 관련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파생상품은 FASB ASC Section 815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차액은 손익으로 반영하며 헷지전략으로 인한 효과 역시 재정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 and net position)에 반영하고 있다.

10. 정부지원기업(GSE)에 대한 투자 및 기타투자액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

(Investment in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and Other Financial and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 계정과목 설명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중 대표적인 기업으로,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정부지원기업으로 모기지론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업들의 주된 사업목표는 모기지를 사들여 증권화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시장에서 모기지를 다시 매입함으로써 모기지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선순위우선주와 보통주워런트의 경우 OMB Circular No.A-136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OMB Circular의 경우 연방기구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 하에서는 공정가액 평가와 같은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액 평가가 2009 회계연도 이후에 적용됨에 따라, 2008년 이전의 평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

■ 주식기재 내용

미국 주식에는 SPSPA(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s; 선순위우선주 매입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루고 있다. 선순위우선주 발행조건 및 1주당 금액 및 상환비율, 워런트 등에 대한 내역과 배당금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원가와 재무제표일 현재의 시가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각 GSE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1. 기타자산(Other Assets)

■ 주식기재 내용

미국 연방정부 주식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기타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교 표시되는 전기와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매입채무(Accounts Payable)

■ 주식기재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재무제표일 현재의 중앙부처별 매입채무 명세를 제공하고 있다(사례 12-1 참조).

<사례 12-1. 미국연방정부 매입채무 주석 사례>

Accounts Payable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Department of Defense	35.4	32.1
Department of the Treasury	4.8	3.8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4.5	6.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8	2.9
Tennessee Valley Authority	2.7	3.2
Department of Justice	2.3	2.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3	2.1
Department of State	2.0	2.8
Department of Education	1.9	1.3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8	1.9
U.S. Postal Service	1.7	1.7
Department of Energy	1.7	1.6
Department of Labor	1.4	0.9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3	1.4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0	0.9
All other	5.6	6.4
Total accounts payable	73.2	73.3

Accounts payable includes amounts due for goods and property ordered and received, services rendered by other than Federal employees, and accounts payable for cancelled appropriations.

13. 연방채무증권 및 발생이자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 계정과목 설명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공채와 유사한 연방채무증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연방채무증권 관련 발생이자는 지급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인/할증 발행차금의 경우 단기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장기채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방지 증권(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의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지수(CPI)에 따라 증권의 기간에 걸쳐 일할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채무증권의 경우 대부분 재무부에서 발행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자부 시장성 증권(bills, notes, bonds와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 이자부 시장성 없는 증권(foreign series,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domestic series 와 saving bonds)
- 무이자부 시장성 증권 및 시장성 없는 증권(만기도래분 및 기타)

■ 주석기재 내용

미 연방정부의 주석에서는 사례 13-1과 같이 시장성 있는 증권인지의 여부와 재무제표일 현재의 계정잔액, 연간 변동액 및 이자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사례 13-1. 연방채무증권의 주식 사례>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Balance September 30, 2008	Net Change During Fiscal Year 2009	Balance September 30, 2009	Average Interest Rate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Treasury securities (public):					
Marketable securities:					
Treasury bills.....	1,484.3	501.9	1,986.2	0.3%	1.6%
Treasury notes.....	2,623.4	1,149.6	3,773.0	3.0%	4.1%
Treasury bonds.....	578.5	99.0	677.5	6.5%	7.1%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524.0	27.3	551.3	2.1%	2.0%
Total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5,210.2	1,777.8	6,988.0		
Nonmarketable securities.....	598.5	(34.6)	563.9	3.7%	4.1%
Net unamortized premium/ (discounts).....	(36.1)	2.2	(33.9)		
Total Treasury securities, net (public).....	5,772.6	1,745.4	7,518.0		
Agency securities:					
Tennessee Valley Authority.....	22.6	-	22.6		
All other agencies.....	0.4	-	0.4		
Total agency securities, net of unamortized premiums and discounts.....	23.0	-	23.0		
Accrued interest payable.....	40.6	1.1	41.7		
Total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5,836.2	1,746.5	7,582.7		

Types of marketable securities:
 Bills—Short-term obligations issued with a term of 1 year or less.
 Notes—Medium-term obligations issued with a term of at least 1 year, but not more than 10 years.
 Bonds—Long-term obligations of more than 10 years.
 TIPS—Term of more than 5 years.

미국은 또한 정부 내 채무 보유현황을 주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서가 감독자금(Trust fund)²⁴⁾, 리볼빙 펀드 및 스페셜 펀드 등을 통해 투자된 연방정부 전체의 채무에 대한 지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있는 감독자금은 특정목적자금(earmarked funds)을 포함하고 있다. 더 상세한 내역은 주석 24번 특정목적자금에서 다루고 있다.

14. 공무원 및 군인연금 총당부채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²⁵⁾

■ 계정과목 설명

미연방채무제표 재정상태표에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총당부채가 계상된다. 이 총당부채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인한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에 대한 총당부채이다. 미연방채무제표 주석 15번에서는 부채로 계

24) SFFAS 31에서는 trust fund와 fiduciary fund를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언급되는 trust fund는 감독자금으로 fiduciary fund는 신탁자금으로 번역.

25)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과 관련한 「연방채무회계기준서 5」(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서 다루고 있음.

상되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연금 이외에 충당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정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주석 26번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주석에서는 부채로 인식되는 연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 주석기재 내용

미연방재무제표에는 주석내용상 '중요한 회계처리 요약'을 통해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관련된 부채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장례급여, 퇴직 후 의료급여 및 생명보험이 포함된다.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서는 분할상각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 15번에서 다루지는 사항은 대부분 표로 설명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연금, 퇴직 후 의료급여, 참전용사 보상 및 장례급여, 생명보험 등이 있다. <사례 14-1>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의 충당부채 금액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나뉘어져서 전기, 당기 비교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연금비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사례 14-2>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금비용에 대한 정보는 전기말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에서 연금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당기말 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며, 연금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과거/직전 근무원가의 조정, 보험수리적 손익 등이 포함된다. <사례 14-3>에서 설명하고 있는 퇴직 후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는 전기말 퇴직 후 의료급여부채에서 당기말 퇴직 후 의료급여부채 금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며, 퇴직 후 의료급여비용은 일반비용, 이자비용, 의료비용 인상을 가정, 보험수리적 손익 등이 포함된다. <사례 14-4>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가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전기 및 당기의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임금상승율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사례 14-4>에서는 퇴직 후 의료급여부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장기 경제적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의료추세율의 전기 및 당기의 정보가 포함된다.

<사례14-1.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결산일 현재 총당부채 금액>

(In billions of dollars)	Civilian		Military		Total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Pension and accrued benefits	1,529.4	1,454.8	1,177.1	1,154.1	2,706.5	2,608.9
Post-retirement health and accrued benefits	352.2	341.8	825.8	820.6	1,178.0	1,162.4
Veterans compensation and burial benefits	N/A	N/A	1,317.5	1,466.7	1,317.5	1,466.7
Life insurance and accrued benefits	39.7	37.5	12.1	12.6	51.8	50.1
FECA benefits	17.9	16.6	8.1	8.8	26.0	25.4
Liability for other benefits	0.3	0.4	3.6	5.0	3.9	5.4
Total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1,939.5	1,851.1	3,344.2	3,467.8	5,283.7	5,318.9

<사례14-2. 연금총당부채의 변동(연금비용)>

(In billions of dollars)	Civilian	Military	Total
Actuarial accrued pension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08	1,454.8	1,154.1	2,608.9
Pension Expense:			
Prior (and past) service costs from plan amendments	(0.4)	0.3	(0.1)
Assumption changes	2.1	7.8	9.9
Expected Normal costs	29.7	22.8	52.5
Interest on pension liability during the period	89.1	65.6	154.7
Actuarial (gains)/losses	24.7	(23.0)	1.7
Total pension expense	145.2	73.5	218.7
Less benefits paid	70.6	50.5	121.1
Actuarial accrued pension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09	1,529.4	1,177.1	2,706.5

<사례 14-3. 퇴직 후 연금급여부채의 변동(퇴직 후 연금급여비용)>

(In billions of dollars)	Civilian	Military	Total
Actuarial accrued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08	341.8	820.6	1,162.4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Expense:			
Normal costs	11.6	21.3	32.9
Interest on liability	20.5	47.7	68.2
Change in medical inflation rate assumption (gains)	-	(1.1)	(1.1)
Other actuarial (gains)	(8.7)	(43.7)	(52.4)
Total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expense	23.4	24.2	47.6
Less claims paid	13.0	19.0	32.0
Actuarial accrued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09	352.2	825.8	1,178.0

<사례 14-4.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장기 경제적 가정/ 퇴직 후 의료급여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장기 경제적 가정>

Significant Long-Term Economic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Pension Liability and the Related Expense				
	Civilian		Military	
	2009	2008	2009	2008
Rate of interest.....	6.25%	6.25%	5.75%	5.75%
Rate of inflation.....	3.50%	3.50%	3.00%	3.00%
Projected salary increases.....	4.25%	4.25%	3.75%	3.75%

Significant Long-Term Economic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and the Related Expense				
	Civilian		Military	
	2009	2008	2009	2008
Rate of interest.....	6.25%	6.25%	5.75%	5.75%
Medical trend rate.....	8.00%	7.00%	6.25%	6.25%

15. 환경 및 폐기물처리부담금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 계정과목 설명

환경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이란 방사능폐기물, 유해폐기물, 화생방 및 핵무기, 기타 환경오염물질 등을 현재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폐기, 처리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말한다. 만일 방사능이나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 가능한 비용인 감시 및 오염물 안전관리 관련 비용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주석기재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사례 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발생하는 부처별로 세부 내역과 예상되는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사례 15-1 참조).

<사례 15-1 부처별 환경 및 폐기물처리부담금 발생 내역>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Department of Energ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180.0	185.4
Legacy environmental liabilities - other	57.7	51.2
Active and Surplus Facilities	29.9	29.4
Total Department of Energy	<u>267.6</u>	<u>266.0</u>
Department of 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30.2	32.0
Disposal of weapon systems program	25.3	28.8
Environmental corrective other	5.7	4.5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5.1	5.2
Total Department of Defense	<u>66.3</u>	<u>70.5</u>
All other agencies	7.9	6.3
Total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u>341.8</u>	<u>342.8</u>

16. 지급의무가 있는 사회보장급여 미지급금 (Benefits Due and Payable)

■ 계정과목 설명

사회보장급여 미지급금(Benefits Due and Payable)은 결산일 현재 사회보장급여 중 그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비교환 거래로 보아 부채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으나, 사회보장급여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 주석기재 내용

미연방재무제표에 관한 주석 17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세부 사회보장 제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세부항목은 노령유족연금,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 보조금, 보충적 의료보험, 장애인보험, 의료보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실업보험, 이외 나머지 항목은 기타보장성항목으로 구분하고 당기와 전기 금액으로 비교 하여 공시하고 있다(사례 16-1 참조).

<사례 16-1 사회보장 급여 미지급금 사례>

Note 17. Benefits Due and Payable

Benefits Due and Payable as of September 30		
<i>(In billions of dollars)</i>	2009	2008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50.2	46.4
Grants to States for Medicaid	25.0	20.4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edicare Parts B and D) ...	24.4	24.0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24.3	22.2
Federal Hospital Insurance (Medicare Part A)	22.4	21.0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5.3	4.5
Unemployment Insurance	4.5	1.6
All other benefit programs	4.7	4.3
Total benefits due and payable	<u>160.8</u>	<u>144.4</u>

Benefits due and payable are amounts owed to program recipients or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of September 30 that have not been paid. For a description of the programs, see the Supplemental Information—Social Insurance section.

17.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 계정과목 설명

미연방재무제표에서는 보증 및 보험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 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증 및 보험충당부채에는 연방정부 공무원, 군인에 대한 충당부채와, 사회보험 및 대출보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석기재 내용

미연방재무제표에 관한 주석 18에서 공시하고 있는 보험 및 보증프로그램 부채는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는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연금급여보증회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unds) 및 기타보험 및 보증프로그램에 대한 부채로 구성된다. 주석 18에서는 표와 서술을 통해서 각각의 실체에 대한 전기 당기의 보험 및 보증부채에 대한 구성내역에 대해서 공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사례 17-1 참조).

<사례 17-1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연방정부주식 사례 >

Note 18.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as of September 30		
<small>(In billions of dollars)</small>	2009	2008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Benefit Pension Plans	83.1	60.0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unds	70.5	12.1
All other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s	12.6	13.0
Total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166.2	85.1

18. 기타부채 (Other Liabilities)

■ 계정과목 설명

미연방정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타부채는 선수수익, 종업원 관련 부채, 보조금과 교부금, 국제통화부채와 그 외의 부채가 포함된다.

■ 주식기재 내용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의 주석19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는 기타부채의 세부내역을 표시하고 있다. 모든 항목을 주석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기타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과목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다. 각 기타부채 항목들을 전기와 당기 비교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주석에서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주석에서 표시하고 있는 계정과목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서술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사례 18-1 참조).

<사례 18-1 기타부채 연방정부 주석 사례>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Balance September 30, 2008	Net Change During Fiscal Year 2009	Balance September 30, 2009	Average Interest Rate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Treasury securities (public):					
Marketable securities:					
Treasury bills	1,484.3	501.9	1,986.2	0.3%	1.6%
Treasury notes	2,623.4	1,149.6	3,773.0	3.0%	4.1%
Treasury bonds	578.5	99.0	677.5	6.5%	7.1%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524.0	27.3	551.3	2.1%	2.0%
Total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5,210.2	1,777.8	6,988.0		
Nonmarketable securities	598.5	(34.6)	563.9	3.7%	4.1%
Net unamortized premium/ (discounts)	(36.1)	2.2	(33.9)		
Total Treasury securities, net (public)	5,772.6	1,745.4	7,518.0		
Agency securities:					
Tennessee Valley Authority	22.6	-	22.6		
All other agencies	0.4	-	0.4		
Total agency securities, net of unamortized premiums and discounts	23.0	-	23.0		
Accrued interest payable	40.6	1.1	41.7		
Total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5,836.2	1,746.5	7,582.7		

Types of marketable securities:
 Bills—Short-term obligations issued with a term of 1 year or less.
 Notes—Medium-term obligations issued with a term of at least 1 year, but not more than 10 years.
 Bonds—Long-term obligations of more than 10 years.
 TIPS—Term of more than 5 years.

19. 연방정부 징수 및 환급

(Collections and Refunds of Federal Revenue)

■ 계정과목 설명 및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보고서에서는 현금주의개념으로 획득한 비교환수익(세금, 부담금, 제재금, 과태료, 사용료 등)과 같은 세입(collections)(사례 19-1 참조)과 발생주의개념으로 인식한 연방정부의 재정상태표 상의 수익(revenue)(사례 19-2 참조)간의 조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발생주의로 인식한 수익과 현금주의로 인식한 세입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사례 19-3 참조).

<사례 19-1. 연방정부 징세에 대한 주석 사례>

Collections of Federal Revenue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2009					
(In billions of dollars)	Federal Revenue Collections	Tax Year to Which Collections Relate			
		2009	2008	2007	Prior Years
Individual income and tax withholdings	2,036.6	1,296.4	702.6	22.3	15.3
Corporation income taxes	225.5	138.2	69.0	1.7	16.6
Unemployment taxes	38.2	21.1	9.7	7.3	0.1
Excise taxes	69.8	57.1	12.5	0.1	0.1
Estate and gift taxes	24.7	0.1	4.0	0.8	19.8
Railroad retirement taxes	4.7	3.6	1.1	-	-
Federal Reserve earnings	34.3	24.5	9.8	-	-
Fines, penalties, interest, and other revenue	6.0	5.8	0.1	0.1	-
Customs duties	23.0	23.0	-	-	-
Subtotal	<u>2,462.8</u>	<u>1,569.8</u>	<u>808.8</u>	<u>32.3</u>	<u>51.9</u>
Less: amounts collected for non-Federal entities	(0.2)				
Total	<u>2,462.6</u>				

<사례 19-2. 연방정부 수익의 환급에 대한 주석 사례>

Federal Tax Refunds Disbursed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2009					
(In billions of dollars)	Refunds Disbursed	Tax Year to Which Refunds Relate			
		2009	2008	2007	Prior Years
Individual income and tax withholdings	339.6	1.1	293.8	30.4	14.3
Corporation income taxes	95.2	6.6	32.6	17.4	38.6
Unemployment taxes	0.1	-	0.1	-	-
Excise taxes	1.8	0.5	0.6	0.1	0.6
Estate and gift taxes	1.2	-	0.3	0.5	0.4
Customs duties	1.4	0.7	0.2	0.1	0.4
Total	<u>439.3</u>	<u>8.9</u>	<u>327.6</u>	<u>48.5</u>	<u>54.3</u>

<사례 19-3. 연방정부 수익과 징세 및 환급의 조정에 대한 주석 사례>

Reconciliation of Revenue to Collections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Consolidated revenue per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2,198.4	2,661.4
Tax refunds	439.3	427.3
ARRA and Stimulus Act Recovery Rebate Payments	(2.0)	(94.3)
First-time Homebuyers Tax Credit	(9.4)	-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child tax credit imputed revenue	(66.7)	(59.2)
Beneficial Interest in Trust	(23.5)	-
Nontax-related fines and penalties reported by agencies	(18.7)	(40.7)
Nontax-related earned revenue	(54.8)	(35.7)
Collections of Federal revenue	<u>2,462.6</u>	<u>2,858.8</u>

20. 전기수정(Prior Period Adjustments)

■ 주석기재 내용

미국연방정부보고서에서는 전기수정이 있는 부처별로 전기보고서 수정금액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사례 20-1 참조).

<사례 20-1. 미국연방정부 주석 사례>

Prior Period Adjustments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Changes to Net Position	
	2009	2008
Prior Period Adjustments		
Department of Defense	1.6	-
Department of the Interior	(0.3)	-
Department of Agriculture	-	11.5
Other prior period adjustments	-	(0.1)
Total prior period adjustments	<u>1.3</u>	<u>11.4</u>

21. 우발상황(Contingencies)

■ 계정과목 설명

미국연방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정책 주석에서는 우발부채의 인식요건과 공시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발부채주석의 경우 미래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Probable) 관련금액을 합리적(Reasonably)으로 추정가능한 경우(금액을 구간으로 추정가능한 경우 가장 작은 금액) 우발부채로 인식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Remote)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 주석기재 내용

우발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우발사항(Insurance Contingencies), 의무보험(Insurance in Force), 보증보험(Deposit Insurance), 법률적인 우발사항(Legal Contingencies), 환경보존과 폐기물에 대한 우발사항(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기타 우발상황, 조약(Treaties)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고 있다. 각 구분항목별로 우발사항(보험계약, 소송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타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부채 금액, 구간으로 추정한 금액의 상한과 하한금액을 공시하고 있다(사례 21-1 참조).

<사례 21-1. 미국연방정부 주식 사례>

Legal Contingencies

Legal contingencies as of September 30, 2009, and 2008, are summarized in the table below:

(In billions of dollars)	Accrued Liabilities ¹	2009 Estimated Range of Loss for Certain Cases ²		Accrued Liabilities ¹	2008 Estimated Range of Loss for Certain Cases ²	
		Lower End	Upper End		Lower End	Upper End
Legal contingencies						
Probable.....	3.4	3.4	3.9	6.6	5.8	7.8
Reasonably possible		10.2	22.3		8.0	21.4

¹ Accrued liabilities are recorded and presented in the related line items of the balance sheet.
² Does not reflect the total range of loss; many cases assessed as reasonably possible of an unfavorable outcome did not include estimated losses that could be determined.

22. 약정사항(Commitments)

■ 계정과목 설명

미국연방정부 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정책 주석에서는 장기리스, 미착주문, 기타 약정사항과 같이 정부의 자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주석기재 내용

미래에 효용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약정사항 중 장기운용리스, 미착 주문, 기타 약정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장기운용리스와 미착주문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타 약정사항은 우선주 구매계약(Senior GSE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등 중요한 항목의 경우 구분표시하고, 나머지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주석사항 중 후속사건과 관련 있는 약정사항의 경우, 재무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술과 테러위험 보험사업(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과 같이 미래에 소송으로 인하여 정부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공

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 약정사항 주식내용 중 잘못 공시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금액, 재무적 영향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다(사례 22-1 참조).

<사례 22-1.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주식 사례>

Long-Term Operating Leases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4.8	23.9
U.S. Postal Service	7.6	8.3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1.5	1.5
Department of State	1.0	1.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0.9	2.3
Department of Agriculture	0.9	0.8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0.6	0.7
Other Operating Leases	4.4	8.2
Total long-term operating leases	<u>41.7</u>	<u>46.7</u>

<사례 22-2. 미착주문과 기타 약정사항 주식 사례>

Undelivered Orders and Other Commitments as of September 30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Restated)
Undelivered Orders:		
Department of Defense	342.9	336.3
Department of Education	224.5	87.8
Department of the Treasury	156.4	57.1
EOP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103.0	85.6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97.6	71.7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89.4	69.4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68.2	56.8
Department of Agriculture	44.3	37.8
Department of Energy	42.4	13.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35.6	33.6
Department of State	15.0	13.6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2.6	7.8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2.4	11.6
Department of Justice	11.4	8.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1.0	8.0
Department of Labor	10.4	5.6
All other agencies	42.9	37.0
Total undelivered orders	<u>1,320.0</u>	<u>942.2</u>
Other Commitments:		
Senior GSE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289.4	186.2
Callable capital subscriptions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62.2	62.3
Contract options and negotiations	10.2	3.7
Fuel purchase obligations	8.6	4.2
Power purchase obligations	7.4	7.2
Agriculture direct loans and guarantees	6.1	3.8
Long-term satellite and systems	4.7	4.8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1.8	1.9
All other commitments	4.5	2.8
Total other commitments	<u>394.9</u>	<u>276.9</u>

23. 특정목적자금 (Earmarked Funds)

■ 계정과목 설명

미국 연방정부회계에서는 “Earmarked Funds” 라는 특정목적자금을 구분하

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따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과 기타재원의유입은 정부의 일반수익(국세)과 구분되며 법이 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SFFAS 27은 특정목적자금의 정의, 인식, 재무제표 표시 및 주식공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특정목적자금을 표시할 때는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에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공시를 할 경우에는 각 주요 특정목적자금 및 기타특정목적자금 총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다.

■ 주식기재 내용

주식에 공시하는 특수목적자금표는 금액이 크거나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 특수목적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특정목적자금은 합계해서 하나의 칼럼으로 보고하고 있다. 각 연방정부기관은 이렇게 특정목적자금으로 거둬들인 현금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채권에 투자한다. 재무부의 국고에는 이렇게 다른 연방정부기관이 시민으로부터 특수목적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거둬들인 현금(세금)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의 행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연방정부기관에게 그 대가로 재무부채권을 발행한다. 따라서 특정목적자금으로 인해 발행된 재무부채권은 연방정부기관의 자산이고 재무부의 부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통합재정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는 주식 “일반시민이 보유한 연방채권(Note 14.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과 연결된다. 동 주식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부내채권보유(Intragovernmental Debt Holdings) 항목은 각각 연방기관이 관리하는 특정목적자금 소유의 재무부채권 연중변동금액과 기말잔액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기말 잔액은 특정목적자금 주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목적자금의 재정상태표에 보고된 자산 중 재무부채권투자자산과 일치한다. 이 금액들은 모두 연결과정을 거친 연방정부통합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급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공시는 주식 “지급의무가 있는 사회보장급여 미지급금(Note 17. Benefits Due and Payable)” 과도 연결된다. 동 주식에 보고된 2009년 연방노령유족보험금으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특수목적자금 주식의 연방노령유족특정목적자금

의 재정상태표의 부채 중 확정된 금액과 일치한다.

만약 연방정부기관이 특정목적자금을 재무부 국고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무부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면 재무부는 특정목적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고에서 현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정부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특수목적자금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그 비용의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주석을 통해 분류·보고한 각 특정목적자금에 대한 설명과 각 특정목적자금 담당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특정목적자금의 상세한 정보는 담당 연방정부기관의 연간재무보고서를 참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로 주석24에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는 연방노령유족보험신탁자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세나 자가영업소득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재무부채권투자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사회보장혜택을 위해 재무부가 걷은 세금 등으로 충당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각 특정목적자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과 정부가 전체적으로 재무부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특정목적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공되고 있다.

<사례 23-1>은 2009회계연도 미연방연간재무보고서 주석24에 공시된 특정목적자금의 재정상태표이다. 내부거래가 모두 제거된 특정목적자금의 기말잔액은 재정상태표의 특정목적자금 기말잔액과 일치한다.

<사례 23-1. 미국연방정부 주식 사례>

Earmarked Funds as of September 30, 2009 ¹

(In billions of dollars)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	Military Retirement Fund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Medicare-Eligible Retiree Health Care Fund (MERHCF)	Federal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 (Medicare Part A)	Civil Service Health Benefits Program Trust Funds
Assets: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	-	-	-	0.1	-
Fund balance with Treasury.....	(0.2)	-	-	-	0.4	1.0
Investments in U.S. Treasury securities, net of unamortized premiums/discounts.....	2,296.3	275.5	754.2	146.8	309.7	50.5
Other Federal assets.....	26.8	2.9	10.2	1.6	28.5	1.2
Non-Federal assets.....	2.3	-	0.4	0.4	0.7	0.9
Total assets.....	2,325.2	278.4	764.8	148.8	339.4	53.6
Liabilities:						
Liabilities due and payable to beneficiaries.....	50.3	3.7	5.3	0.7	22.4	3.8
Other Federal liabilities.....	4.7	-	0.1	0.1	24.4	0.3
Other non-Federal liabilities.....	-	1,173.5	1,455.4	509.4	0.2	340.3
Total liabilities.....	55.0	1,177.2	1,460.8	510.2	47.0	344.4
Total net position.....	2,270.2	(898.8)	(696.0)	(361.4)	292.4	(290.8)
Total liabilities and net position.....	2,325.2	278.4	764.8	148.8	339.4	53.6
Change in net position:						
Beginning net position.....	2,128.7	(901.1)	(653.6)	(366.7)	302.9	(285.5)
Prior period adjustment.....	-	-	-	-	-	-
Beginning net position, adjusted.....	2,128.7	(901.1)	(653.6)	(366.7)	302.9	(285.5)
Investment revenue.....	107.7	2.8	37.1	1.1	15.6	1.9
Individual income taxes.....	571.2	-	-	-	194.1	-
Unemployment and excise taxes.....	-	-	-	-	-	-
Other taxes and receipts.....	-	-	-	-	0.5	-
Miscellaneous earned revenues.....	-	-	-	-	-	-
Other changes in fund balance (e.g., appropriations, transfers).....	12.1	72.5	31.4	21.4	14.5	9.1
Non-program expenses.....	-	-	-	-	-	-
Program net cost.....	549.5	73.0	110.9	17.2	235.2	16.3
Ending net position.....	2,270.2	(898.8)	(696.0)	(361.4)	292.4	(290.8)

¹ By law, certain expenses (costs), revenues, and other financing sourc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above funds are not charged to the funds and are therefore financed and/or credited to other sources.

24. 신탁형활동 (Fiduciary Activities)

■ 계정과목 설명

신탁형활동이란 연방정부와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의 현금 또는 자산을 연방정부가 대신 수금, 관리, 보관, 투자 또는 매도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신탁형 현금이나 자산은 연방정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SFFAS 31 신탁형활동 보고(Accounting for Fiduciary Activities)에서는 연방재무제표에 주식사항으로 각 연방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신탁형활동의 성격과 신탁형활동을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의 리스트 및 신탁형활동의 총순자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SFFAS 31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언급되는 감독자금(trust fund)과 신탁형활동(fiduciary activities)을 구분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감독자금이란 연방정부의 행정활동을 위해 구분된 자금이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신탁형 기금이라고 명칭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수익으로 잡은 감독자금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목적자금(Earmarked fund)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신탁되지 않은 감독자금(Non-fiduciary “trust funds”)에 대한 회계적 정의는 SFFAS 2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적자금으로 봐야 한다.

■ 주석기재 내용

SFFAS 31에서는 신탁형활동의 자산과 부채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탁형활동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연방정부통합재무제표에는 신탁형활동 자산 부채가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SFFAS 31은 또한 재무부 국고에 입금된 신탁형활동으로 인한 신탁형국고잔액(Fiduciary Fund Balance with Treasury: Fiduciary FBWT)과 연방정부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국고잔액(Fund Balance with Treasury: FBWT)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²⁶⁾ 즉 연방정부기관의 국고잔액은 정부내거래로 인한 항목이며 그 소유권이 정부에 있지만, 신탁형국고잔액의 소유권은 비연방정부기관이나 개인에게 있다.

SFFAS 31의 문단26에서는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연방정부기관 재정상태표에 보고된 국고잔액(FBWT)과 연방정부기관의 주석에서 공시된 신탁형 국고잔액 (Fiduciary FBWT)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국고잔액에 현금으로 유입된 금액 중 신탁형 활동으로 인한 부분은 통합재무제표 (Government-wide balance sheet)에 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활동을 통해 재무부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통합재무제표에 “시민이 보유한 재무부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26) SFFAS 31, Accounting for Fiduciary Activities, #6, SFFAS 31, 신탁형활동 보고, 문단 6번 참조
Fund Balance with Treasury (FBWT): 국고잔액은 자산 계정으로써 연방기관들의 예산집행권한을 나타냄, 연방기관들의 비용집행이나 세수로 인해 FBWT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미국의 동 주식공시는 SFFAS 31의 Appendix C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탁형 활동 주식공시 예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공시로 신탁형활동 표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표에서는 각 신탁형프로그램별 기말 순자산을 표시해주고 있다. 또한, 신탁형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기타 연방정부기관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으며, 각 해당 기관의 재정상태표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24-1>은 2009회계연도 미연방연간재무보고서 주식25번에 공시된 신탁형활동의 기말 순자산표이다.

<사례 24-1. 미국연방정부 주식 사례>

Schedule of Fiduciary Net Assets as of September 30, 2009	
(In billions of dollars)	
FRTIB-Thrift Savings Plan	234.0
Department of the Interior	3.6
All other	5.0
Total fiduciary net assets	<u>242.6</u>

25. 사회보장연금 (Social Insurance)²⁷⁾

■ 계정과목 설명

미연방재무제표 주식 '사회보장연금'에서는 비교환 거래 성격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비교환 거래적 성격의 연금과 보험제도이므로 재정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 목표를 장기재정 안정화에 두어, 장기재정수지 현재가치를 추계하여 사회보험보고서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를 작성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Note 26 사회보장연금 (Social Insurance)과 관련된 내용은 「연방재무회계기준서 17」 (SFFAS No. 17;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7)에서 다루고 있음.

■ 주석기재 내용

주석에 공시되는 사회보장연금의 적용제도는 사회보장연금(The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program, the Disability Insurance (DI)), 건강보험(Hospital Insurance), 철도퇴직연금(Railroad Retirement and Survivor Benefit program), 실업보험 및 블랙링연금(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rogram)이 있다. 각 제도별 추정치들은 경제적·인구통계적 가정에 근거하여 장기재정평가로 추정된다. 기본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사회연금보고서는 추정기간을 75년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연금보험의 고용주 및 가입자의 기여금,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기여금, 석탄의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다.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철도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세 그룹의 참여자가 있다. 현재 수급권을 취득한 자,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참여자, 잠재참여자이다. <사례 25-1> 에서는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철도퇴직연금, 블랙링연금의 네 가지 사회보장연금의 5년간의 신탁기금잔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에서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사례 25-1. 5개년 연금제도별 사회보장보험 프로그램 신탁기금잔액>

Social Insurance Programs Trust Fund Balances ¹					<u>UNAUDITED</u>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08	2007	2006	2005
Social Security.....	2,419	2,238	2,048	1,859	1,687
Medicare:					
HI	321	312	300	285	268
SMI Part B	59	53	38	23	19
SMI Part D	1	3	1	-	-
Railroad Retirement	22	33	32	30	28
Black Lung.....	(6)	(10)	(10)	(10)	(9)

¹ As of the valuation date of the respective programs.

26. 수탁토지와 유산자산 (Stewardship Land & Heritage Assets)

■ 계정과목 설명

수탁토지란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로서 현세대와 다음세대가 사용하고 즐기기 위해 보존하는 토지를 말한다. 수탁토지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토지는 원칙적

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행정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수탁토지는 재정상태표에 자산계정으로 보고되나 그 금액은 보고되지 않는다. 주식사항에도 금액에 대한 정보가 아닌 면적, 크기 등의 비 금전적인 단위로 표시된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수탁토지로는 국립공원, 국립산림, 야생지역, 야생동물 보호와 에코시스템 보존을 위한 지역 등이 있다. 그러나 신탁된 토지이거나 내무부 인디언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탁토지는 미국이 건국된 첫 세기인 1781년과 1867년 사이에 정부가 소유하게 된 토지다. 이러한 수탁토지는 미국 전체 국토의 약 28%에 해당한다. 미 내무부는 더욱 자세한 기준으로 수탁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 9월 30일 현재 국립야생지역 550개, 378개의 공원, 134개의 지역적관리구역, 66개의 어류보호지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수탁토지에 대한 자세한 기준, 현황, 구분, 현재 관리상태 등의 정보는 내무부,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의 재무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 주식기재 내용

유산자산은 1) 역사적, 자연적 의미가 있거나 2)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3)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 인식한다. 유산자산의 예로는 요세미티국립공원, 국립공문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이 있다. 정부는 유산자산을 박물관에서 모아서 보관하는 컬렉션 타입 유산자산과 국립공원이나 역사적 건축물과 같이 단독적으로 관리하는 비컬렉션 타입으로 구분한다.

SFFAS 29 유산자산과 수탁토지(Heritage Asset and Stewardship Land)가 공표되기 이전에는 수탁토지와 유산자산에 대한 정보가 필수보충관리정보에 보고되었으나, SFFAS 29는 자산의 현황상태보고를 제외하고는 기본재무정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의 현황상태만을 필수보충정보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9월 30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는 수탁토지와 유산자산이 정부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와 관리기준에 대한 정보를 기본재무제표의 공시사항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정보는 필수보충정보에서 제공한다.

SFFAS 29에서는 유산자산이 만약 유산자산으로서의 기능과 정부의 행정활동에도 사용되는 2가지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용도유산자산(multi-use heritage asset)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일반유형자산(PP&E)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탁토지의 경우에도 일반유형자산과 연계된 상태로 취득하였다면, 일반유형자산으로 같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용도유산자산 이외에 유산자산의 취득을 위해 집행된 비용은 기간 비용처리하고 순원가표에 정보를 보고한다. 또한 다용도유산자산 이외의 유산자산이 유서 등에 의해 기부된 경우에는 유산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27. 후속사건(Subsequent Events)

■ 계정과목 설명

미국연방정부 보고서에서는 재무보고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이나,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 정부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또한 재무보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 등을 서술한다.

V. 유용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앞에서는 발생주의 도입 5개국 및 ‘09년 미 연방정부 주식공시 세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국가회계기준 주식공시 규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국가회계기준 주식 공시 규정 개선방안

(1)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외화자산, 부채 주석 공시 규정에 따라 외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사례 1-1 참조).

<사례 1-1 대외경제협력 기금 외화자산 및 부채 주석 사례>

구분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합계	소계	-	46,092
		USD	39	46,092
	현금및현금성자산	소계	-	2
		USD	-	2
	단기금융상품	소계	-	14
		USD	-	14
	미수채권	소계	-	27
		USD	-	27
	장기대여금	소계	-	46,049
		USD	39	46,049

그런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보관금, 담보제공 등)은 현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주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미국 연방정부를 포함한 캐나다 등이 공시하고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보고실체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의 금액과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2] 미수채권의 세부내역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미수채권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미수채권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수채권의 세부과목인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용 재무제표에서 채권을 미수채권계정과목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속명세서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주석과 같이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에서 채권의 세부과목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미수채권) 보고실체는 재정상태표에 미수채권 등의 과목으로 일괄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경우 미수국세와 그 이외의 채권을 구분하여 채권 금액 및 충당금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용자 및 보증충당부채 상세 내역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용자대여금 및 주택저당채권, 보증채무는 장단기대여금(용자) 및 장기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에 해당한다. 정부결산작성지침 및 국가회계기준 제45조에 따라 고시된 용자회계처리지침에서는 용자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장기대여금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세부과목인 정부내장기대여금, 정부의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사례 3-1참조).

<사례 3-1 부속명세서_대여금명세서 중 장기대여금 명세서 >

* 장기대여금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분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합 계				
정부내 장기대여금	소 계			
	장기 전대차관대여금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정부내 장기에탁금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정부외 장기대여금	소 계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장기융자금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소 계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또한 보증충당부채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상 세부적인 회계처리지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각 회계주체별로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로 처리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기타장기충당부채 내에 <사례 3-2>의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될 것이다.

<사례 3-2. 주석_장기충당부채 내 보증충당부채>

▪ 보증충당부채

(단위 : 백만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		
기중 증가액		
기중 감소액		
기말잔액		

미연방재무제표 작성사례처럼 융자사업 및 보증사업의 목적 및 대상, 필요

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국회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주석을 통해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용자사업 및 보증사업의 주요 수혜대상 및 유형과 액면가액 및 관련 수익비용, 보조원가충당금과 관련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연방사례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나 현재가치할인에 사용된 이자율, 용자관련 조정내역 및 관련비용도 주석 기재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보증충당부채의 현재 시행이 유예되고 있어 주석 공시가 필요하지만 주석공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준칙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사례 분석만 수행하고 공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용자) 보고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용자금의 현황 및 내용 등 (미상환원금 액면가액, 현재가치금액, 보조원가 등 명세내역)
2. 현재가치 할인에 사용된 할인을
3. 용자금의 조정내용 및 관련비용 등

[4] 유형자산의 상세내역(종류, 증감현황 등)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및 감가상각처리 방법,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 기재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형자산명세서를 통해 세부명세를 보고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일종으로 표시되는 주석이 아닌 부속명세서를 통해 유형자산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제공할 정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부속명세서의 정의가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의 명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속명세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요유형자산별 기초가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감액, 환입, 기타증감, 기말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사용수익권 등을 열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년도 증감명세서도 별도 표로 제공함으로써 자산의 변동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례 4-1 참조).

<사례 4-1. 국가회계기준 부속명세서 중 일반유형자산증감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자 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감가상 각누계액	사용수익권
합 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전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또한 추가적으로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부가액 대비하여 표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자산의 세부명세표도 유형자산명세서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

다만, 주석이 아닌 부속명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재무제표 외로 간주되는 부속명세서의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대상 정부형 회계 경우 ‘09년 기금 및 특별회계의 기제출된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보고서에서도 유형자산 등의 부속명세서 관련 정보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주석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미국연방 사례에서도 종종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항목을 주석이 아닌 필수보충정보 등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유형자산의 상세 내역은 중요성 및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재무제표로 포함되는 주석을 통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속명세서로 제공하

는 정보들은 계정별 금액에 대한 명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감액 또는 환입, 중요한 취득과 관련한 정보는 주석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유형자산) 보고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유형자산별 명세 및 내용연수
2. 유형자산 별 기초/기말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증감내역
3. 중요한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4.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금액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에서 사회기반시설자산의 정의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및 감가상각처리방법 등은 현재 확정되지 않아 공시범위 내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주석항목이 아닌 부속명세서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명세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사례 4-2 참조).

<사례 4-2. 정부결산지침서 중 부속명세서 (7) 사회기반시설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목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기말감가상각누계액	사용수익권
합계										
도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하천									
	상하수도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상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속명세서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내용은 미국지방정부 주석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보다 구체적이다.

다만,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는 감가상각이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자산에 대한 추가정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향후 사회기반시설 관련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될 경우 감가상각제외사유, 대체적인 방법, 3년 이상의 유지관리비용, 현재 서비스제공능력의 측정기준 등 충분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속명세서로 처리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재무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석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

미국지방정부의 경우 감가상각이 제외되는 '수정접근법' 대상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사회기반시설 관련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될 경우 이를 참조하여 감가상각제외사유, 대체적인 방법, 3년 이상의 유지관리비용, 현재 서비스제공능력의 측정기준 등 충분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사회기반시설) 보고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사회기반시설자산 증감명세 및 추정내용연수, 가격측정 정책 등
2. 감가상각 제외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대체방법
3. 3년이상의 유지관리비용
4. 현재 서비스제공능력의 측정기준 등

[5] 유가증권의 상세내역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유가증권과 투자증권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속명세서에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와 채무증권명세서로 유가증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사례 5-1, 5-2 참조).

<사례 5-1. 정부결산지침서 중 부속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장기투자증권잔액명세서

(단위: 백

만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사례 5-2. 정부결산지침서 중 부속명세서 채무증권명세서>

▪ 채무증권명세서

(단위: 백

만원)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투자증권 감액손실	투자증권 감액손실환입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유가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장부가액 이외에 국회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정보를 주석에 표시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유가증권) 보고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투자증권별 지분율,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 공정가치
2.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만기일에 대한 정보
3.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감액손실과 회복의 내용
4. 유가증권과 관련한 총 이자수익, 배당수익 금액

[6] 파생상품의 상세내역

국가회계기준 제49조 제3항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식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보유목적 및 보유목적별 회계처리 사항, 파생상품이 당기손익 및 순자산변동 등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파생상품은 그 특성 상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향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무적 위험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거래 목적 및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공시함으로써 국회를 포함한 정보이용자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식관련 규정 예시

(파생상품) 보고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1.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인 경우
 - (1) 거래목적
 - (2) 거래목적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대응정책 등)
 - (3)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2.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1. (1)’ 내지 ‘(3)’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 (2)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 (3) 순자산조정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금액 및 내역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1. (1)’ 내지 ‘(3)’ 및 ‘2. (1)’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
 - (2) 순자산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중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3) 순자산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위
 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래 또는 회계
 사건의 내역
 - (4)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
 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순자산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7] 연금 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유예가 된 상태이다. 연금총당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공시사항으
 로는 총당부채 금액의 산정근거와 연금비용의 구성내역 및 각 연금의 재원
 및 운용방법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연금회계준칙
 (안)을 마련하여 연금총당부채의 인식 및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공시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주석공시 및 필수보충정보 작성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당부채와 관련한 주석사항은 정해진 사항이 없으나 미연방재무제표
 를 검토한 결과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사항에 포함될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연금총당부채와 관련한 정보들은 연금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
 한 가정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 가정의 수치가 기간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가정이 재무보고서의 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상세한 공시
 가 필요하다. 또한 연금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들의 제공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의 예측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금회계준칙(안) 및 회계처리지침에 동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의 현재 시행이 유예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석 공시가 필요하지만, 주석공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준칙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사례 분석만 수행하고 공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8]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 표시 세부내역(기타자산 및 부채)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기타자산 및 부채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회계기준 제55조에서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타자산과 관련한 주석공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무제표 본문에서 통합하여 표시한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는 국가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주석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결산작성지침 등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중요한 금액이 통합되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 표시) 보고실체는 재무제표 본문에 중요한 금액이 통합되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9] 국공채 발행 및 차입금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의 정보(유형별 금액 및 이자율 등)는 공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차입금 상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채 등에 대한 상세정보 및 이자율, 차입금 대비 이자비용

등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국공채 발행 및 차입금 현황) 보고실체는 발행한 국공채 및 차입금의 종류별 차입액, 이자율, 이자비용 및 상환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0] 소관별 회계 및 기금의 요약재무정보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서는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의 재무정보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Earmarked Funds”를 통합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는 구분해서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구분된 기금에 대한 잔액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의 특별회계나 기금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여 개별 회계의 재무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회계의 재정상태가 다른 회계와 통합되어 파악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일반회계와 다른 재원의 재정상태를 구분하여 보여 주는 장점도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소관별 회계 및 기금의 요약재무정보) 보고실체는 소관별 회계 및 기금별로 재무현황, 프로그램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11] 개선방안 요약

연구 결과 신규로 주식 공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등 8건이고, 이 중 명세서를 주식으로 옮겨오는 것은 미수채권의 세부내역 등 3건이다.

현재 유예되고 있는 보험 및 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 포함)의 경우 주식 공시가 필요하지만 주식공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사례 분석만 수행하고 공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내역은 충당부채 관련 2건이다.

국가회계기준에서 이미 규정한 주식 공시사항 중 파생상품은 추가로 개발하여 공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국가회계기준 주식공시 규정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가회계기준 주식공시 규정 개선안 요약>

No	주식 공시 내용	규정 여부	공시 규정 필요성
1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X	필요
2	미수채권의 세부내역	명세서	필요
3	융자 및 보증충당부채 상세 내역	X(유예)	보류
4	유형자산의 상세내역(종류, 증감현황 등)	명세서	필요
5	유가증권의 상세내역	명세서	필요
6	파생상품의 상세내역	○	추가 개발
7	연금 충당부채	유예	보류
8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 표시 세부내역(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X	필요
9	국공채 발행 및 차입금 현황	X	필요
10	소관별 회계 및 기금의 요약재무정보	X	필요

[12] 추가적인 공시 규정 적용 가능 시기

연구 결과 주식 공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건과 추가개발 1건의 적용 가능 시기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0회계연도 적용

○ No. 2 미수채권, 4 유형자산 : 부속명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수금과 미수국세채권의 명세 수준으로 주식에 포함하도록 한다면, 2010년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부속명세서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 주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부속명세서나 필수보충정보도 주식에 준하여 공시하고 감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작성된 자료가 공시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 No. 6 파생상품: 현재 공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추가로 파생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명하고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므로 2010년에 포함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No. 8, 10 세부 공시: 기타자산 부채의 주식 추가공시 및 소관 회계 및 기금의 재무정보 추가공시는 재무제표 작성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 공시하는 것이므로 2010년에 포함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No. 9 국공채 발행 및 차입금 세부내역: 현재도 국가채무로 분류되는 부채이므로, 주식으로 공시하는 국공채 및 차입금 세부내역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2010년에 포함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② 2011회계연도 적용²⁸⁾

○ No. 1 사용제한 금융자산 : 어떠한 사항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11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28) 주식 공시 규정을 보류한 5건도 11년 국회 재무제표 제출에 맞추어 회계처리방법 및 주식공시내용 규정이 필요

○ No. 5 유가증권의 상세내역 : 부속명세서에 있는 유가증권 및 투자증권에 대한 명세 수준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주석에 추가되므로 이에 따른 준비작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

(1)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 공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대여금 등에 대한 명세서가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단순 명세만을 표기하고 있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부처별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회계 등과 통합되어 표시됨으로써 해당 정보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석을 통해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포함한 상세설명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기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도입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자금 투입사항 등을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
- 만일 공적자금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부속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공시만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 제공

■ 주석관련 규정 예시

(공적자금 지원 사업) 보고실체는 통합재무제표에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공적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그램별 자금 투입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적자금 등에 대한 투입내역을 재무제표에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범위 및 공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도입에 시간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적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2] 후속사건

국가회계기준 및 정부결산작성지침에서는 재무보고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주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무보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 중 당 보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법률제정 등을 주석에 포함시킴으로서, 재무보고일에 정부보고서 작성 시 가정 및 추정 등을 사용하여 인식한 채무, 우발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석관련 규정 예시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사건) 보고실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재정상태표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사건의 성격
2.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

하지만, 후속사건은 결산완료 시점(감사원 감사 또는 국회 의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3. 결어

이상 보고한 추가적인 주석 개발 필요 분야 및 주석 도입 전략을 기초로 국가회계기준 및 결산작성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별첨1] 연구 시 분석한 각국 재무제표의 주석 목차

1. 미국

번호	주석내용
----	------

1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2	Cash & other monetary Assets
3	Accounts & Taxes Receivables
4	Loans Receivable, Mortgage Backed Securities, and and Loan Gurantee Liabilities, Net
5	TARP Direct Loans and Equity Investments, Net
6	Beneficial Interest in Trust
7	Inventories & Related Property
8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9	Securities and Investments
10	Derivatives
11	Investments in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and Other Financing and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12	Other Assets
13	Accounts Payables
14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15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16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17	Benefits Due and Payable
18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19	Other Liabilities
20	Collections and Refunds of Federal Revenue
21	Prior Period Adjustments
22	Contingencies
23	Commitments
24	Earmarked Funds
25	Fiduciary Activities
26	Social Insurance
27	Stewardship Land and Heritage Assets
28	Subsquent Events

2.캐나다

번호	주석내용
1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2	Spending and Borrowing Authorities

3	Expenses
4	Accumulated Deficit
5	Unmatured Debt
6	Public Sector Pensions and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7	Other Liabilities
8	Tax and Other Accounts Receivable
9	Foreign Exchange Accounts
10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11	Other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12	Tangible Capital Assets
13	Financial Instruments
14	Contractual Obligations
15	Contingent Liabilities
16	Segmented information
17	Subsequent events

3. 호주

번호	주석내용
1	Statement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2	Taxation revenue
3	Sales of goods and services
4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5	Other sources of non-taxation revenue
6	Employee and superannuation expenses

7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expenses
8	Payment for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9	Interest expense
10	Grants expense
11	Expenses by function
12	Net write-down of assets (including bad and doubtful debts)
13	Net gain/(loss) from the sale of assets
14	Net foreign exchange gain/(losses)
15	Net swap interest received
16	Other gains/(losses)
17	Advances paid and receivables
18	Investments
19	Equity investments
20	Land and buildings, infrastructure, plant and equipment,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and investment properties
21	Intangibles
22	Inventories
23	Other non-financial assets
24	Assets by function
25	Deposit liabilities
26	Government securities
27	Loans
28	Other borrowings
29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30	Employee benefits
31	Other provisions and payables
32	Net worth
33	Reconciliation of cash
34	Commitments
35	Contingencies
36	Financial instruments
37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38	Events occurring after balance date
39	Consolidated revenue fund
40	Special accounts
41	Assets held in trust
42	Reconciliations to ABS GFS measures
43	Audit expenses
44	List of Australian Government reporting entities
45	Glossary

4. 뉴질랜드

번호	주석내용
1	Summary of Accounting Policies
2	Taxes and Levies Collected through the Crown's Sovereign Power
3	Sales of Goods and Services
4	Interest Revenue and Dividends
5	Other Revenue

6	Transfer Payments and Subsidies
7	Personnel Expenses
8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9	Other Operating Expenses
10	Interest Expenses
11	Insurance Expenses
12	Gains and Losses on Financial Instruments
13	Gains and Losses on Non-Financial Instruments
14	Receivables
15	Marketable Securities, Deposits and Derivatives in Gain
16	Share Investments
17	Advances
18	Inventory
19	Other Assets
2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1	Equity Accounted Investments
22	Intangible Assets and Goodwill
23	Payables
24	Borrowings
25	Insurance Liabilities
26	Retirement Plan Liabilities
27	Provisions
28	Net Worth
29	Capital Objectives and Fiscal Policy
30	Deposit Guarantee Schemes
31	Commitments
32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33	Financial Instruments
34	Acquisition of Toll (NZ) Limited

5. 영국(통산부 사례)

번호	주석내용
1	Statement of Accounting Policies
2	First time adoption of IFRS
3	Analysis of net resource outturn by section
4	Reconciliation of outturn to net operating cost and against Administration Budget
5	Reconciliation of net resource outturn to net cash requirement
6	Analysis of income payable to the Consolidated Fund
7	Reconciliation of income recorded within the Operating Cost Statement to operating income payable to the Consolidated Fund
8	Non-operating income classified as Appropriations-in-Aid
9	Non-operating income not classified as Appropriations-in-Aid(A-in-A)

10	Staff numbers and related costs
11	Other administration costs
12	Programme costs
13	Administration and Programme non-cash costs summary
14	Income
15	Analysis of net operating cost by spending body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7	Intangible Assets
18	Financial instruments
19	Investments and loans in other public sector bodies
20	Other financial assets
21	Impairments
22	Inventories
23	Trade receivables and other current assets
24	Investments and loans in public bodies: current
25	Cash and cash equivalents
26	Trade payables and other current liabilities
27	Provisions for Liabilities and Charges
28	Financial Guarantees
29	Other Financial Liabilities
30	Notes to the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ng Costs by 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31	Commitments under PFI contracts
32	Capital Commitments
33	Commitments under leases
34	Other financial Commitments
35	Contingent Liabilities
36	Losses and special payments
37	Related-party transactions
38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39	Third-party assets
40	Restatement o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Operating Cost Statement as a result of Machinery of Government
41	Additional Entities

[별첨2] 결산작성지침의 주석공시 내용

구 분	비 고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필수작성항목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